

警察行政史 (1945—1964)

朴 東 緒

目 次

1. 序 論

가. 研究의 目的

나. 概 念

2. 行政管理

가. 組織管理

나. 警官의 數와 成分

다. 人事行政

라. 財務行政

3. 機能別行政

가. 保安警察

나. 警備警察

다. 情報警察

라. 搜查警察

4. 結 論

1. 序 論

가. 研究의 目的

從來 筆者가 많은 關心을 가져왔던 分野와 거리가 먼 警察分野를 연구한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기이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우선 이 문제를 연구하게 된 理由라고 할까 또는 目的이라고 할까 하는 것을 說明해 보려고 한다.

첫째로 每日같이 신문을 통해 경찰과 關聯된記事——交通, 團束, 脫線警官——가 나오고 있으며, 市民은 누구나 길에 나가면 경관과 마주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일이 얼마나 우리의 生活과 밀접한 關聯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많은 國民은 이들의 문제에 대한 理解가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이해할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이 보다 妥當한것 같으며 그러면서도 一方的으로 비난만 하고 있으며 또한 3萬

以上의 職業警察官이 있으면서도 이들中에 警察行政에 관하여 진지한 關心과 研究를 하고 있는 분도 他分野에 비하여 적은 것 같으며 不過 몇名 안되는 것 같다.

이러한 態度는 우리가 他國의 植民地支配를 경찰을 앞장세워 받았던 時代의 유물이며, 또한 그當時에는 그러한 태도를 나무랄수도 없겠으나 獨立된지 20年이 지난 오늘날에는 市民, 警官自身이 태도를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선 必要한 것은 他國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警察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통한 警察行政에 관한 市民의 關心을 높혀 警察行政의 發展에 공헌해 보자는 것이다

둘째, 行政學이 우리나라에 도입된지 不過 11年(1955年 부터)밖에 되지 않은데도 責任은 있겠으나 지난 11年的 歷史, 研究業績을 회고해 불격에 거의 全的으로 各機能別行政의 共通的인 管理的인 部面에 대해서만 關心을 표시하여 왔고, 反面에 各部處의 機能別行政에 관하여는 너무나 등한시해 온것 같다. 이제는 이러한 分野에 대해서도 行政學徒가 開拓해 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점에서 우선 警察行政에 첫손을 내민 것이다.

세째, 지난 20年間의 警察行政史를 더듬어 보는데 있어 여러가지 方法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간에 있었던 일을 正確히 사진을 찍는 식으로 묘사 서술한다는 것은 到底히 論文으로서 어려운 일이며 또한 歷史家가 아닌 著로서 별의의가 없다고 생각되어 여기서는 지난 20年間에 있었던 큰 變化, 發展에 초점을 두고 다루어 볼려고 하는데 變化, 發展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行政一般이 요구하고 있는 效果性, 能率性, 民主性이라고 하는 點에서 變化發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分析的으로 다루어 보려고 한다. 여기의 效果性이란 특히 目的에 重點을 두고 그 目的達成 程度를 뜻하는 것으로 過程에 重點을 두는 能率性 民主性과 區別된다고 생각된다.

네째, 이에 따라 内容을 警察行政의 管理的인 要素로서 機構 및 成分, 人事, 豫算을 다루고 난 다음 機能別로 保安, 警備, 情報, 犯罪搜查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려고 한다.

다섯째, 研究方法으로서 어느 하나의 方法에만 의지하지 않고 우선 이 方面에 관한 單行本, 雜誌, 論文을 읽고 이해하면서 質疑表(短文式)를 作成하여 이문제에 관하여理解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에게 보내어(16名) 回答을 구했으며 또한 直接 여러사람(10名)을 만나 의견을 물고 교환하였다. 이와 같이 하는 途中 公務로 바쁜 現職의 여러분이 친절하게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는 바이다.

나. 概念

警察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어느나라의 경우에나 時代의 變遷에 따라 다르며 歐美에서도 소위 大陸系와 英美系는 다른 傳統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李朝末

부터 今日까지 時代, 政治的狀況의 變遷에 따라 여러번 變化를 보아왔다.

이제 現行警察의 일종의 基本法이라고 할 수 있는 「警官職務執行法」에 따라 보면 第 1 條에 「本法은 警察官이 國民의 生命, 身體, 財產의 保護와 犯罪의豫防, 公安의 維持, 其他 法令執行等의 職務를 忠實히 遂行하기 위하여……」라고 規定하고 있음에 비추어 불적에 警察은 社會公共의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國家의 政治權力에 立脚하여 國民에게 命令 強制하여, 自由를 制限하는 것이 主任務라고 보겠는데 從來 大陸系의 영향을 받았으나 解放後에 英美系로 전환되어가고 있어 다음에서 보겠지만 여러번 갈등을 이르게 됐다고 보겠으며, 아직도 특히 경찰의 使命 및 機能의 範圍面에서 混同을 빚어내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데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경찰의 任務가 國民의 生命, 財產의 保護에 置重되고 一般福祉行政으로부터 벌어지는 限 경찰行政에서 요구되는 것은 民主性, 合法性이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것은 再言을 요치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前述한 行政發展 또는 變化的 尺度로서 제시된 民主性, 能率性, 效果性中 경찰의 경우는 그 業務의 性質上 民主性 또는 그中에서도 奉仕性, 合法性이 제일 重要視되다고 생각한다.

2. 行 政 管 理

가. 組織管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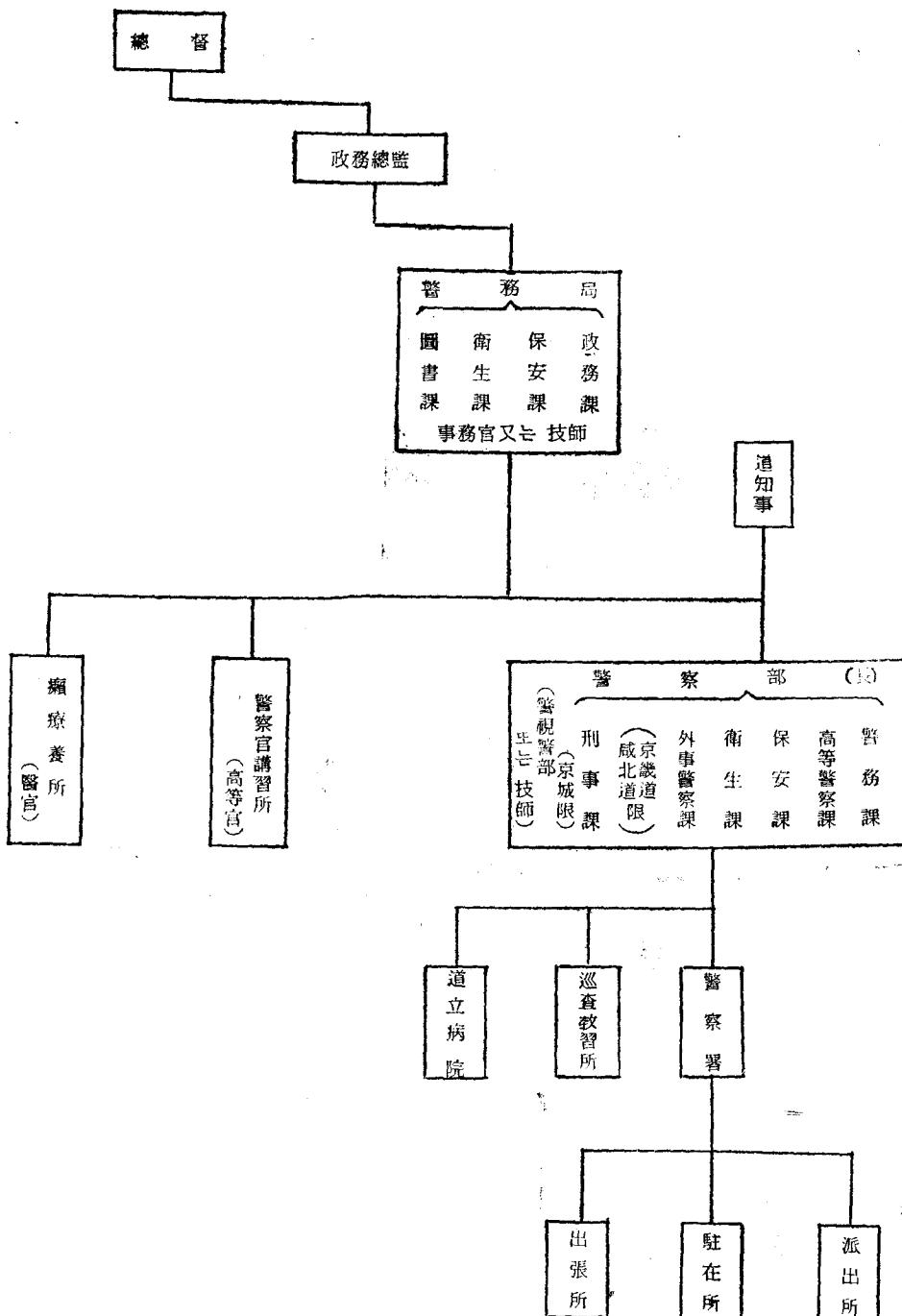
日政時에 植民地支配의 強制的인 手段으로서의 구실을 한 警察은 解放後 「Arnold」將軍의 1945年 9月 14日의 布告에 의하여 다시 一時 마비되었던 警察은 그 機能을 日政代身 美軍政의 支配下에 회복하게 되었으며⁽¹⁾ 곧 이어 同年 10月 21日에 國立警察이 創設되었고, 그以後 여러번 機構上の 變化가 있었으나 代表的인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警察機構의 變遷⁽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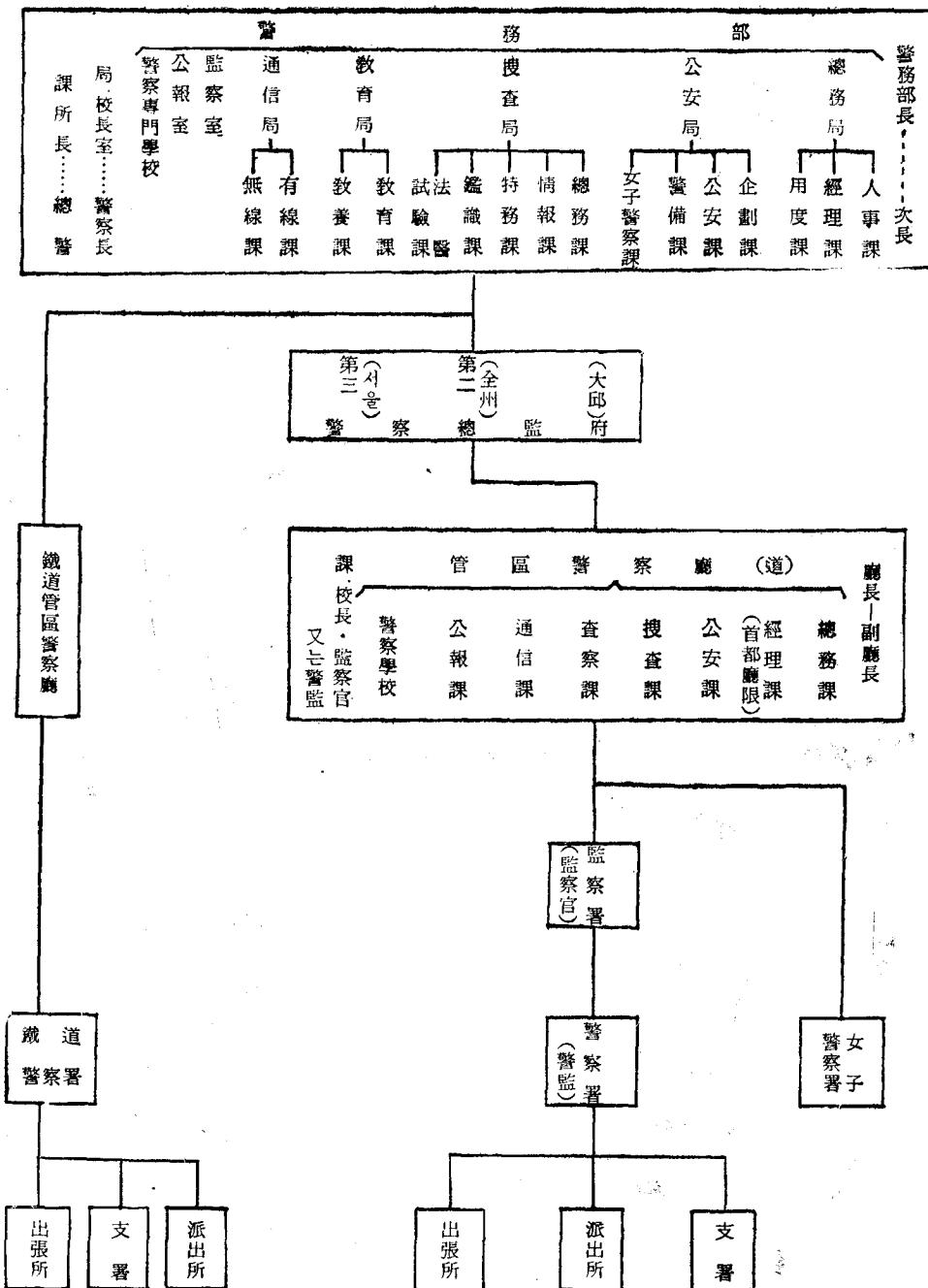
(1) 蔡元植, 韓國警察의 沿革과 展望에 관한 研究, 서울大 行政大學院 碩士論文, 1962年, pp. 75—6

(2) 1937年, 1946年, 1953年, 1955年, 1956年, 1961年은 警察統計年報, 서울, 內務部 治安局, 1961年, 6號, p.p. 23—32, 1948年은 行政관리, 1963年, 5號, p. 132, 1964年은 경찰통계년보, 1964年, 8號, p.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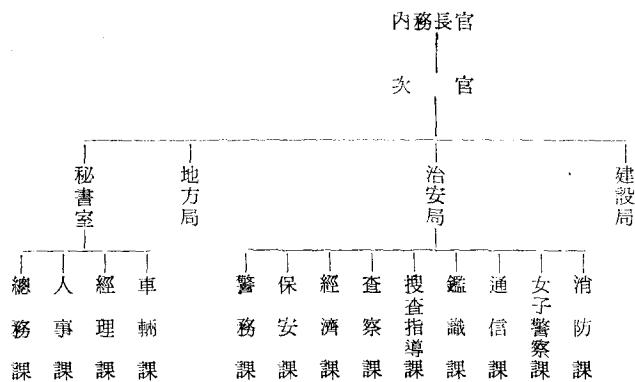
(外) 所謂朝鮮總督府時代警察機構(1937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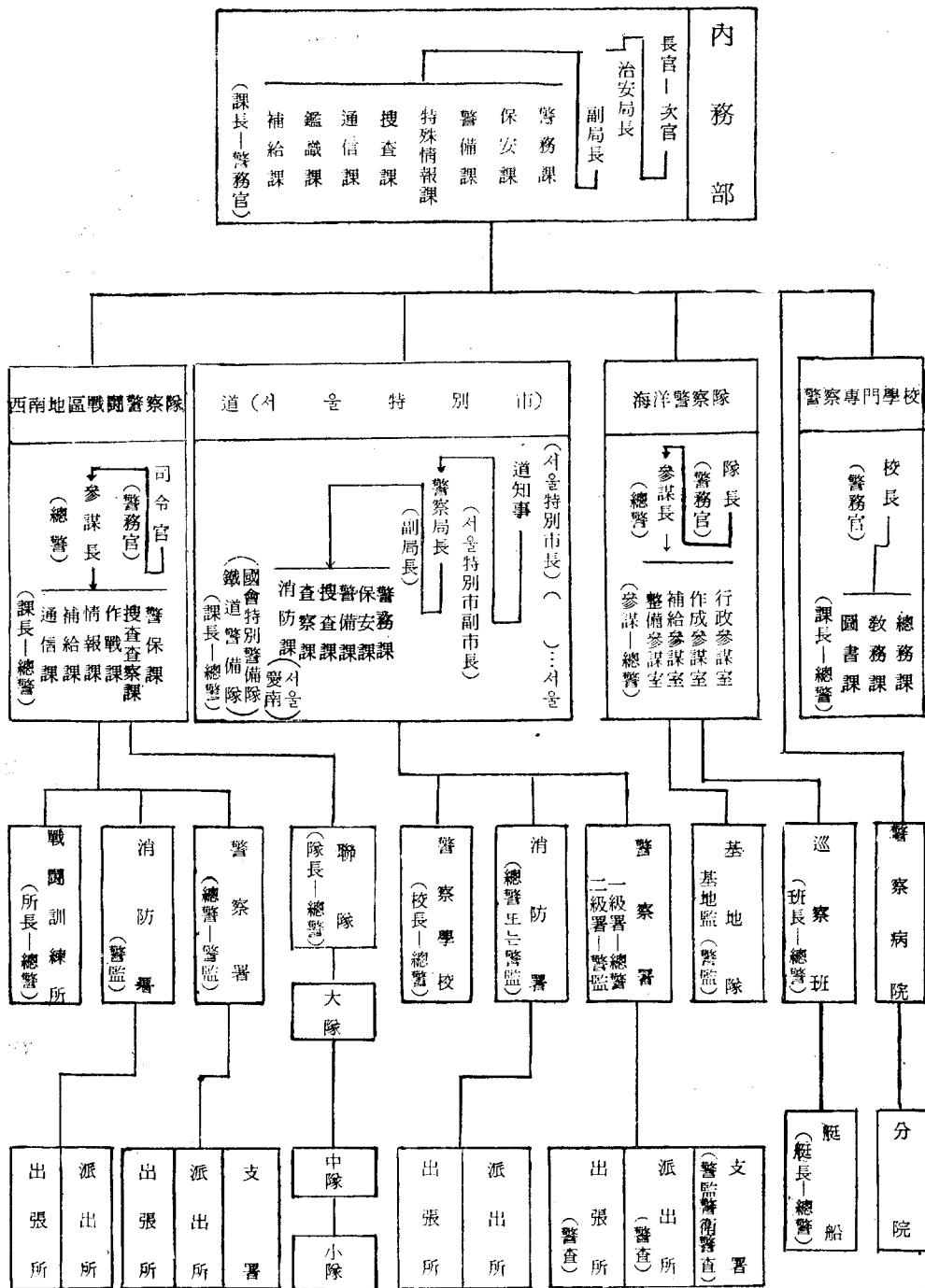
(4) 軍政時代警察機構(1946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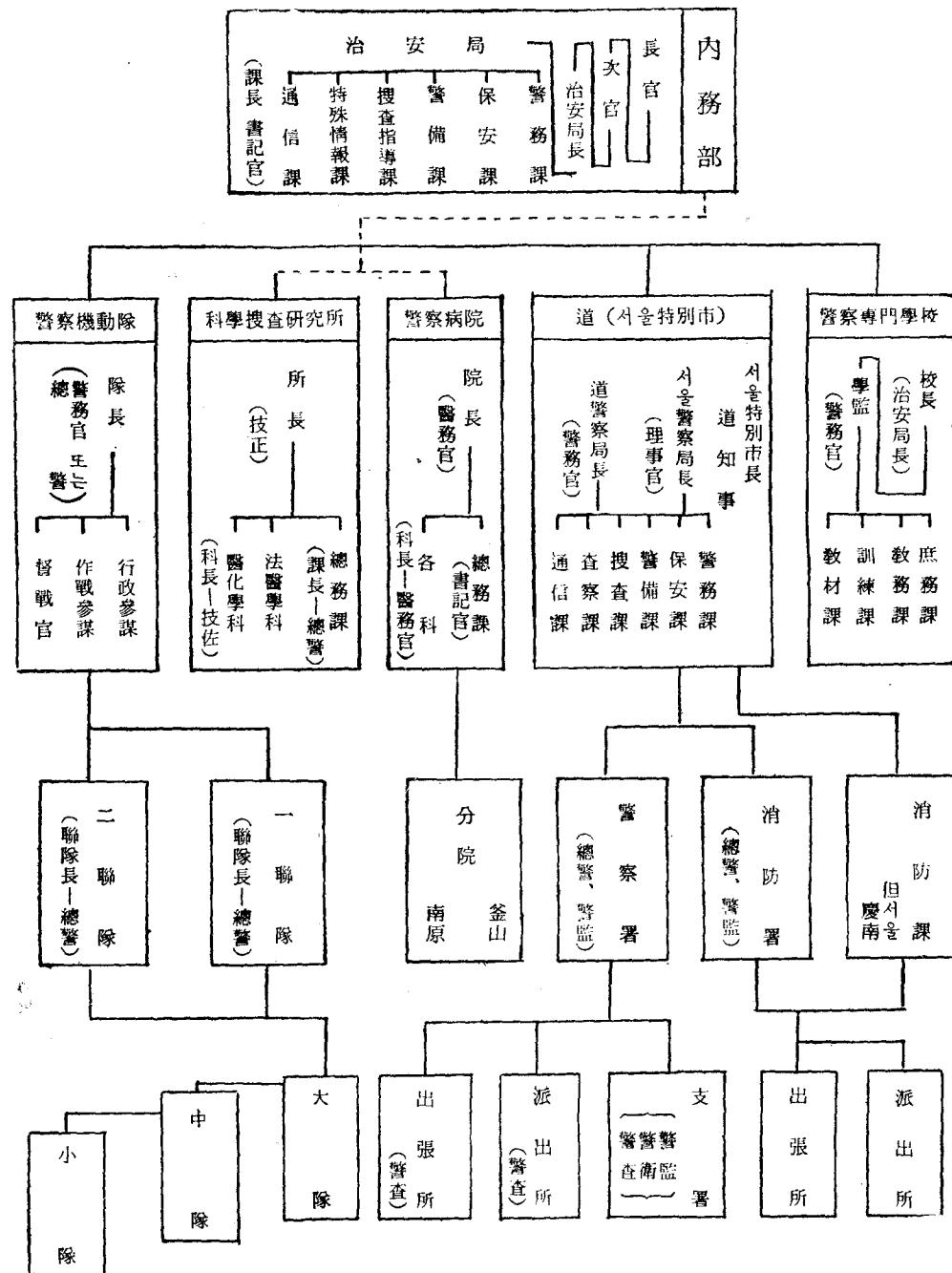
(乙) 大韓民國政府警察機構(1948. 1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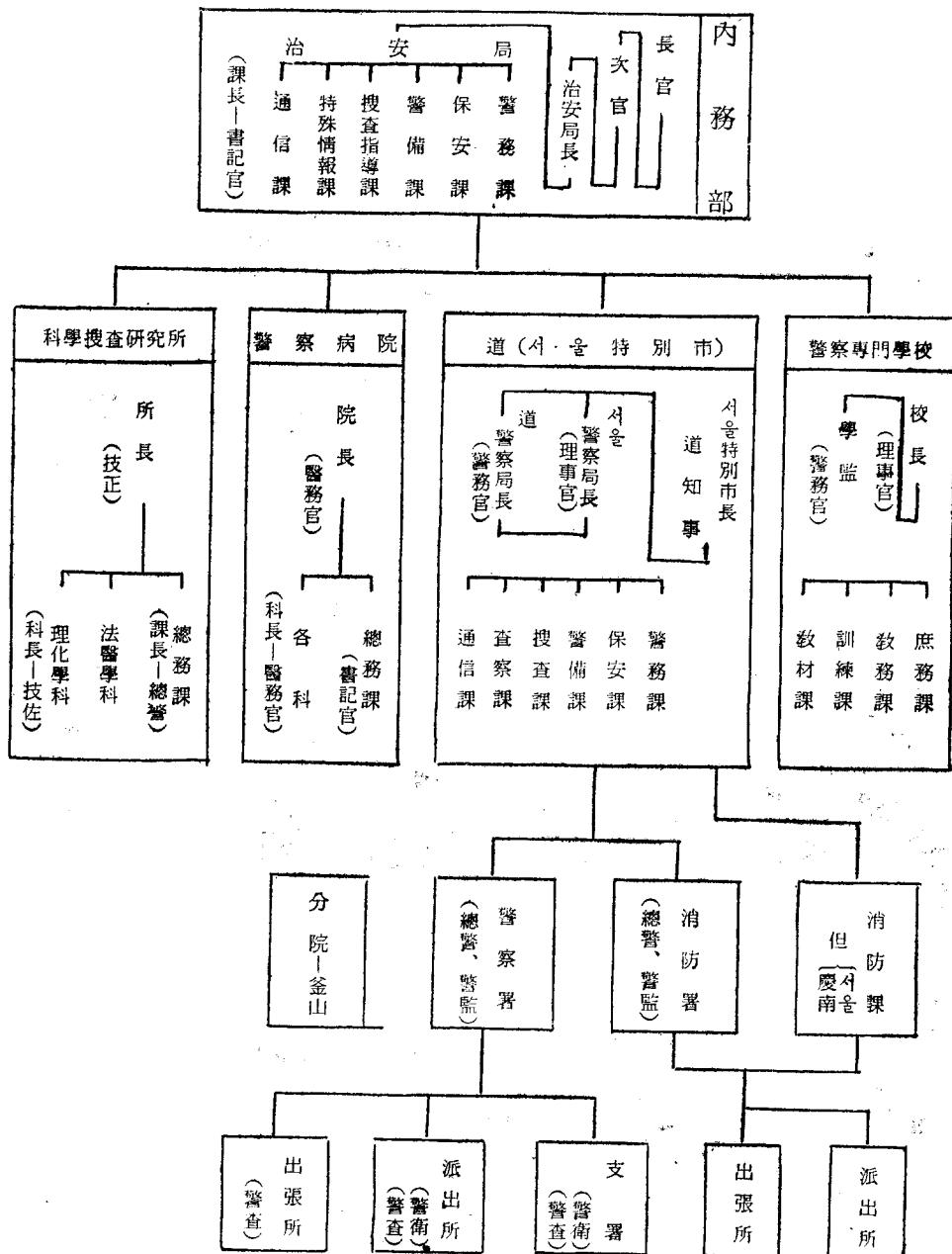
(라) 大韓民國警察機構一覽表(1953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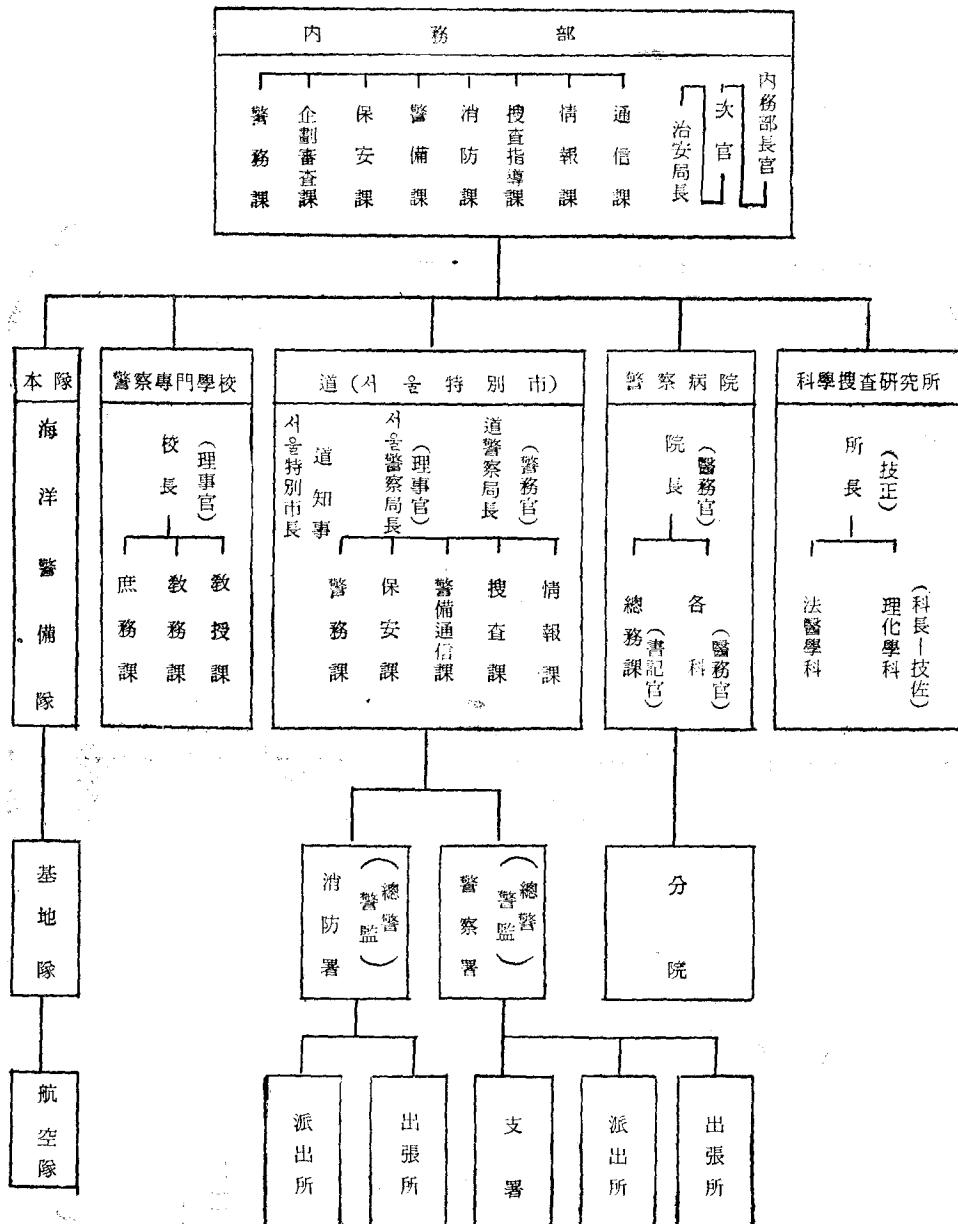
(叶) 大韓民國警察機構一覽表(1955 年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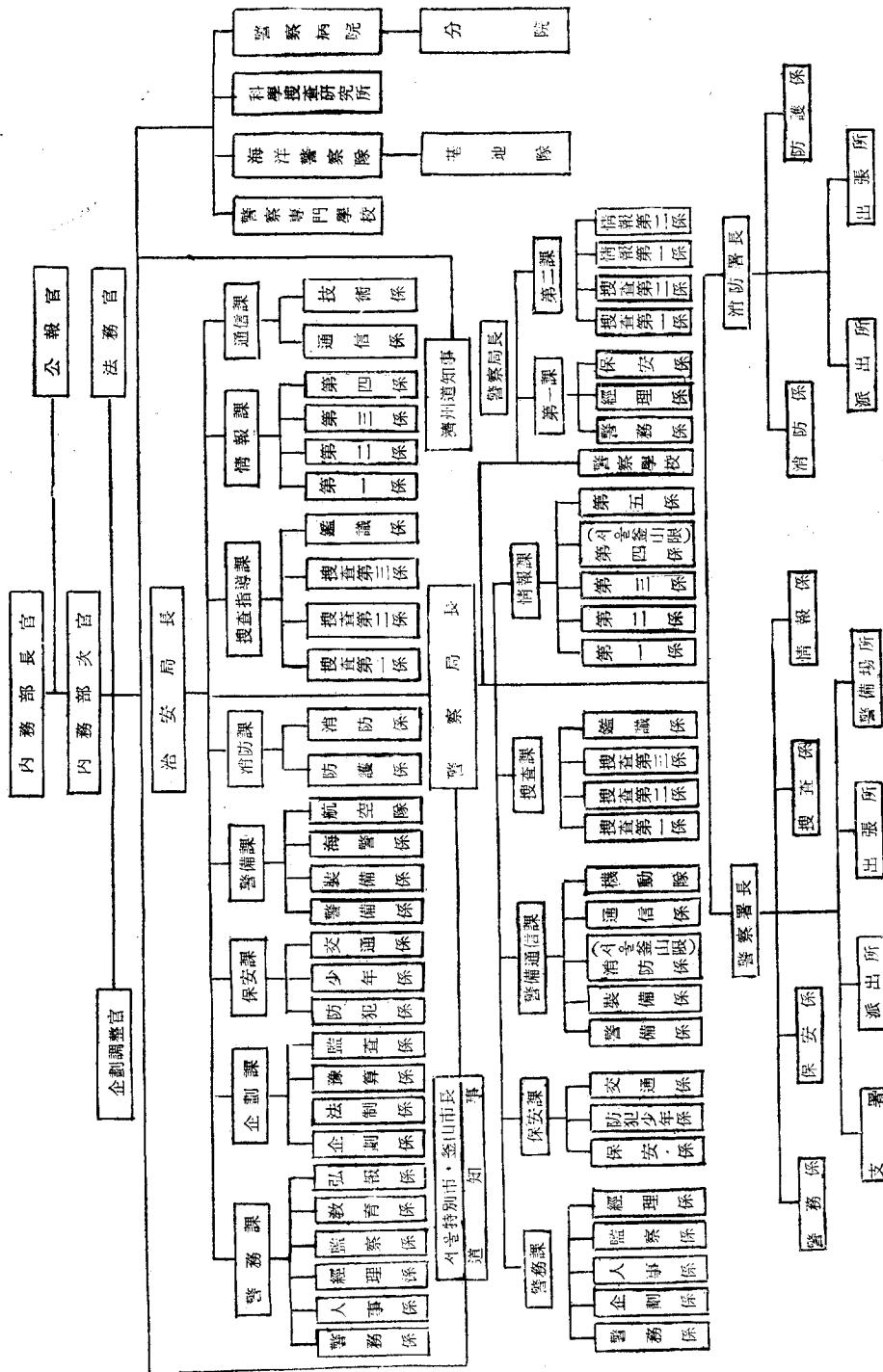
(附) 大韓民國警察機構一覽表(1956 年度)



(사) 大韓民國警察機構(1963)



(o) 大韓民國警察機構表(1964)



다음에 警察官署의 數의 變遷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警察官署數의 變遷⁽³⁾

年 度 種 類	警 察 署	支 署	派 出 所	出 張 所	消 防 署	派 出 所	出 張 所	合 計
1945	147 (7.37)	1,498 (75.20)	259 (13.00)	40 (2.00)	11 (0.55)	32 (1.6)	5 (0.25)	1,992 (100)
1946	152 (7.39)	1,552 (74.61)	264 (12.69)	62 (2.98)	13 (0.62)	32 (1.53)	5 (0.24)	2,080 (100)
1947	159 (7.45)	1,578 (73.98)	271 (12.7)	74 (3.46)	14 (0.65)	32 (1.5)	5 (0.23)	2,133 (100)
1948	163 (7.07)	1,596 (69.24)	294 (12.75)	194 (8.41)	18 (0.78)	35 (1.51)	5 (0.21)	2,305 (100)
1949	170 (7.92)	1,614 (75.24)	323 (15.05)	94 (4.38)	19 (0.88)	34 (1.58)	5 (0.23)	2,145 (100)
1950	169 (7.13)	1,623 (68.56)	320 (13.01)	202 (8.53)	20 (0.84)	28 (1.18)	5 (0.21)	2,367 (100)
1951	169 (7.04)	1,625 (67.7)	324 (13.5)	236 (9.83)	20 (0.83)	21 (0.87)	5 (0.2)	2,400 (100)
1952	169 (6.96)	1,632 (67.29)	328 (13.52)	250 (10.3)	20 (0.82)	21 (0.86)	5 (0.2)	2,425 (100)
1953	169 (6.74)	1,642 (65.57)	361 (14.41)	274 (10.94)	24 (0.95)	32 (1.27)	2 (0.07)	2,504 (100)
1954	169 (6.56)	1,644 (63.89)	491 (19.08)	218 (8.47)	24 (0.93)	26 (1.01)	1 (0.03)	2,573 (100)
1955	167 (8.05)	1,432 (69.11)	361 (17.42)	49 (2.36)	24 (1.15)	37 (1.78)	2 (0.09)	2,072 (100)
1956	166 (7.55)	1,444 (65.75)	487 (22.17)	36 (1.63)	24 (1.09)	37 (1.68)	2 (0.09)	2,196 (100)
1957	164 (7.41)	1,437 (64.96)	508 (22.96)	40 (1.8)	24 (1.08)	37 (1.67)	2 (0.09)	2,212 (100)
1963	163 (6.96)	1,394 (59.57)	625 (26.7)	85 (3.63)	24 (1.02)	45 (1.92)	4 (0.17)	2,340 (100)
1964	163 (6.96)	1,394 (59.57)	625 (26.7)	85 (3.63)	24 (1.02)	45 (1.92)	4 (0.17)	2,340 (100)

(3) 變遷上의 特色

以上과 같은 機構上의 變遷을 좀 더 具體的으로 年代別로 기술한 후 全體的으로 발전되는 變革上의 特徵을 파악해 보려고 한다.

(가) 美軍政時⁽⁴⁾

(3) 1945年부터 1955年까지는 내무행정지적사, 1958年, 4卷 2號, p. 383, 그후의 것은 각 경찰통계년보에서

(4) 경찰통계년보, 1964年, *ibid.*, pp. 14—5.

① 1945年 10月 21日에 軍政廳에 警務局을 설치하고 여기에 官房, 總務課, 公安課, 搜查課, 通信課를 두었으며, 地方의 道知事 밑에는 警務部를 두고 그 밑에 警務課, 保安課, 刑事課, 經濟課, 情報課, 消防課, 衛生課를 두었는데 이는 事實上 日政時의 것과 별 큰 變遷이 없었다고 보아야 겠으며 거의 그대로 답습하였다고 보아야 겠다.

② 그러나 漸次 警察機構는 變革되기 시작하여 1945年 12月 27日에 知事權限에서 警察行政을 分離시켜 道警察部를 獨立시키고, 그 밑에 總務課 公安課, 搜查課, 查察課, 通信課를 두었다.

③ 이와 같이 하여 獨自的인 길을 걸어나가기 시작한 警察機構는 더욱 機構를 擴大하여 1946年 1月 16日에 警務局을 警務部로 하고 課를 局으로 升級시켜 總務局, 公安局, 搜查局, 通信局, 教育局으로 擴大改編하였으며 그 후에도 계속 同年 1月 24日에 搜查局에 科學的搜查를 위한 鑑識課를 新設하였으며, 다음 2月 1日에 朝鮮警察學校를 警察專門學校로 하고 각 道에 警察學校를 新設하여 警察官의 大量募集에 응하게 하였으며 同年 2月 5일에는 騎馬隊를 신설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

④ 이러한 機構擴大的 추세는 계속되어 1946年 4月 1일에는 각 道의 警察部를 管區警察廳으로 改編하고 首都外에 8管區를 두고 그 밑에 地區監查署를 설치하여 監察官을 配置하였으며 民主行政의 본보기로서 각 管區警察廳에 公報室을 설치하였다. 이에 이어 鐵道警察이 編入되었던 것을 鐵道管區警察廳으로 新設하고 7月 1일에는 역시 民主行政의 것으로서 女子警察課가 公安局에 신설되어 4大都市에 女子警察署가 신설되었다.

⑤ 다음 다시 1946年 9月 17일에는 警務統監府 3個所가 서울, 大邱, 全州等地에 中央의 警務部 밑에 新設되어 警察組織은 최고로 擴大되고 階層도 많아졌으며, 軍政時의 마지막으로 1948年 7月 5일에 主要都市에 特別警察隊가 新設되었다.

以上으로서 軍政時代의 狀況을 검토하였는데 여기의 特徵을 보면 다음의 두 가지로 集約될 수 있을 것 같다.

① 機構가 대표적으로 단시일내에 擴大되었는데, 이는 後述되는 警察官의 數의 急增하고도一致되는 것이라고 보겠는데, 그 理由는 日政時에 警察을 장악했던 日人幹部는 一時に 撤收되고 나머지 韓國人警察官은 그 階級도 알았고, 따라서 管理能力이 약한데다 解放直後의 反日思想의 高調로 그들의 土氣는 低下되어 이들의 治安確保能力은 심히 弱化된데 반하여 社會는 极度로 혼란에 휩쓸려 요구되는 高度의 能力間의 차가 심한데다 美軍스스로는 이러한 문제에介入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거기다 韓國軍의 創設이라고 하는 것은 美蘇의 對立, 國內의 左右翼의 對立을 생각할 적에 더욱 어려운 일이었으므로 결국 韓國人警察力만이 唯一한 手段으로 간주되었으며 이에만 依持하게 된 데 있다고 보아야 겠다.

② 이와 같이 機構가 擴大된 데에는 단순히 많은 數의 경찰관이 증가하였다는 數的增加만

이理由가 되는 것이 아니라美國制度의 形式的模倣 또는 輸入에 있었다고 보아야겠으며 특히 우리와 같이 領土나 警察官數도 美國의 몇十分之一 밖에 안되는 곳에서 階層이 中央에 部, 局, 그 밑에 總監府, 管區警察廳, 監察署, 警察署 등으로 구성될 必要가 統率의 範圍와 關聯시켜 불적에 妥當한 것이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시되기 때문이다.

③ 美軍政의 目的이 韓國이 民主的인 獨立國家로서 수립되는 것을 도우는데 있었다고 보며 따라서 行政面에서도 外務關係行政이 다루어지기 시작하여 獨立國家의 政府의 구실을 하여 갔으며, 또한 警察行政面에서도 後述하겠지만 從來의 秩序維持以外의 文化, 經濟分野의 廣範한 機能이 離脫해 나가면서도 수사의 科學化와 人權의 守護를 위한 鑑識課, 女子警察이 新設되어 간것을 볼 수 있다.

(나) 獨立後⁽⁶⁾

獨立後의 17年間은 政治, 經濟, 社會, 行政面에 變化가 있었으나 보통 몇時期로 나누는 것이 原則이겠으나 警察機構面에서는 1948年 建國當初의 큰 變革을 除外하고는 別 큰 變革이 없어 이 時期를 細分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여기서는 한데 다루려고 한다.

① 우선 建國初의 政府構造를 불적에 軍政時의 擴大된 機構가 대폭적으로 축소되어 警察總監府, 警察廳制度가 없어졌으며(1948年 9月 2日 內務部 訓令 第1號) 또한 獨立機構性이 바뀌어 內務部와 道知事밑에 位置해 되었으며

② 同年 11月 7일에는 治安局에 警務課, 保安課, 經濟課, 搜查指導課, 檢察課, 鑑識課, 通信課, 女子警察課, 消防課가 설치되었으나 經濟課는 8個月後인 1949年 7月에 廢止되었다.

③ 1949年 9月에 治安局에 教育課를 신설하여 9課가 되었으며 警察專門學校를 內務部長官所屬下에 신설하였다.

④ 1950年 3月 31일에 다시 消防課와 女子警察課가 廢止되어 機構가 축소되어 7課로 되었으며

⑤ 6.25動亂을 맞아 1950年 7月 27일에 補給課와 副局長制가 新設되었으며 同年 12月 27일에 警察病院이 新設되었으며 同年 8月 10일에는 다시 檢察, 搜查課를 統合하여 情報搜查課로 하고 教育課를 다시 新設하였다.

⑥ 終戰에 이르러 1953年 7月 6일 警備課를 신설하고 教育課를 다시 廢止하였으며 1955年 2月 17일에는 다시 補給課를 廢止하였으며 鑑識課는 內務長官直屬下의 國立科學搜查研究所는 發展의解消를 함으로서 治安局의 課數는 6으로 축소되었다.

⑥ 그 후 別다른 變革이 없다가 5.16軍事革命後 企劃審查課, 消防課가 新設되었다.

以上으로서 主要機能上의 變革을 더듬어 보았는데 여기의 特色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5) 國會速記錄, 1955年 1月 19日, 趙炳玉氏의 發言.

(6) 行政 관리, *op.cit.*, pp. 132—38, 경찰통계년보, 1964年, pp. 15—16.

같다.

① 우선 軍政時에 그렇게 擴大된 機構가 人員의 감원은 없이 축소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 理由는 軍政時에 擴大하게 된 理由로서 變化가 있었다면 美國人的 決定權이 없어진 것 밖에 없는데 그렇게 큰 機構上의 變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반대에 그 理由를 찾아야 할 것 같다. 즉 그 當時 警察機構의 獨立部의 存續 또는 축소에 관한 論爭이 國會에서 政府組織法 制定時 벌어진 것을 보면 축소시켜야 한다는 것은 法治主義, 民主主義, 國際的威信과 같은 大義名分을 들고 나오는 것⁽⁷⁾과 左翼系統의 경찰권의 弱化試圖가 作用하였는가 하면 他面에는 右翼에서는 治安, 主로 反共上의 理由⁽⁸⁾로 獨立部案을 밀고 나오다 表決의 結果 獨立案이 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留意할 것은 軍政時代에 갑자기 늘어난 低質의 경관의 橫暴에 대한 反感에서 左翼이 아닌 所謂 中間路線人们도 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며 순수히 左右翼의 理念上의 싸움으로만 決定된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에 수반되는 行政에 관한 思潮의 하나로서 橫暴를 막으려면 그 職員의 質的向上 勤務條件의 向上을 기하는 方法보다도 豫算, 人員, 機構의 축소를 통하여 끌어 놓음으로서 可能하다는 것이다며⁽⁹⁾ 이때의 이러한 생각이 事實上 現在까지 계속支配하고 있어 一旦 축소된 후 다시 適正化를 이룩하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② 治安局으로 축소되었지만 軍政時의 유산으로서 女警과 消防課가 있다. 점차적으로 士着의인 것에 의하여 사라지고 대신 新生國의 경찰로서 교육에 置重하려다가 6.25로 실시되지 못한 과정을 찾아 볼 수 있으며

③ 6.25로 경찰은 戰鬪隊列에 끼게되어 補給課와 警察病院이 신설되고

④ 戰爭의 終結에 따라 뒷整理 및 그間に 소홀히 하였던 일의 정돈을 하는 의미에서 우선 内外의 警備를 위한 警備課, 海洋警察隊의 창설이 있었으며 또한 內的充實을 위하여 警察航空隊(1954年 10月), 警察儀仗隊(1954年 11月)의 創設이 있었으며 또한 科學搜查研究所의 창설이 있었다.

⑤ 그다음은 1955年的 政府機構簡素化가 있었을 때 警察의 경우는 結果的으로는 不發彈으로 끝나고 말았으나, 國會에서의 論爭이 벌어졌는데 이때는 1948年과는 政治的事情이 달라져 左右翼의 싸움이 아니라 같은 右翼內에서의 與野間의 싸움이며 主로 警察의 中立化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미 公安委員會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하는 것이다⁽¹⁰⁾. 그런데

(7) 卷頭言, 民主警察, 第5號, 1948年「一言하오니 警察이 기구상 獨立치 않았음은 경찰의 弱化를 의미함이 아니요 民主的現代法治國家의 諸例에 충거함이라……」.

(8) 國會速記錄, 1948年 7月 14日, 15일의 柳聖甲, 李南圭, 李浩錫議員 發言.

(9) 國會速記錄, 1955年 1月 18日, 趙淳議員은 「……從來에 軍政時代에 경찰청을 獨立시켜 놓고 무 슨 좋은 일을 보았지요? 오늘날 이것을 道知事간에 다 두고 内務部의 一局長程度에다가 잡아 빼놔도 그래도 항상 염려스럽고 그 발호할까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인데……」

(10) 國會速記錄, 1955年 1月 12日, 19日.

與黨에서 이에 反對하는 理由로서는 如前히 反共과 調整 統合의 문제를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¹¹⁾.

이때의 失敗는 自由黨의 壓倒的인 勢力에 의한 것이었으나 4.19로 무너지자 숙원이었던 中立化案은 다시 行政府와 國會에서 提起되어 각各研究되었으나 民主黨이 執權함에 따라 역시 消極的인 태도를 취하여⁽¹²⁾ 時日만 끌어오다 5.16을 마지하게 되었으며 이경우에도 初期에는 中立化 심지어는 内務部의 廢止까지 논의되다 内務部關係人の 反對와 軍政의 延長으로 다시 수포로 돌아가고 다만 이미 係로 설치된 企劃關係가 企劃審查課로 창설된 것而已. 이들이 기구상에 미친 具體的인 영향이라고 하겠다.

以上으로서 警察機構上의 20年間의 變革을 고찰하였는데 綜合的으로 다음과 같은 特色 또는 問題點이 發見된다.

① 아직 中立化가 이루되지 못하여 警察이 國民으로 부터 信任을 잃고 있으며 또한 警察自身의 士氣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어 民主化에 進一步하고 있지 못하다.

② 集權性에도 何等의 進展이 없으며 거기마다 治安局長은 内務長官에 대하여 자칫하면 系線機關화하는 것은 고사하고 局長에 대하여同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治安局의 各課의 數는 무려 9課(外事包含)에다 事實上의 부속기관이 4個나 있어 이미 統率의範圍를 능가하고 있다는 點에서 行政의 能率化에 별다른 進展이 없다고 보아야겠다.

이러한 點에서 警察行政의 民主化와 能率化를 위하여 시급한 것은 中立化와 中央과 地方機關間의 分業에 따른 分權과 中央機構의 行政理論에 부합되는 再調整 및 擴大가 있어야 겠다.

(4) 管理面

管理面에서는 民主化나 能率化를 위한 組織的的努力이 1954年까지 混亂, 動亂으로 있을 수 없었다고 보아야겠으며 이에 대한 試圖를 들어 보면

① 역시 終戰後의 1954年 11月의 全國事務監査의 實施를 처음으로 드는 것이妥當할것 같다. 이에 앞서 1月에 治安局內에 臨時警察事務整備委員會를 설치하여 各例規通譯, 報告, 統計書類의 정비를 기하고 이어 監査를 실시하여 戰時中에 지완된 事務를 再整理도록 하였으며⁽¹³⁾ 그 후에도 계속 每年 이러한 일은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 法令의 廢統合, 文書簿의 정리등이 1958年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② 1959年에 特記할 것은 企劃係가 新設되어 그 밑에 警察裝備의 現代化 法制의 整備, 組織管理의 合理化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고 人員이 班으로 領성되서 이 方面에 약간의 進展을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11) *ibid.*, 1955年 1月 13日.

(12) 東亞日報, 1960年 5月 31日, 6月 4日, 10月 15日.

(13) 경찰통계년보, 1954年, pp. 22—23.

③ 그러나 역시 管理面의 큰 變革은 行政의 他面에서도 同一하지만 5. 16 後라고 보아야 하며 軍人들이 軍隊行政에서 습득한 것을 轉用한데 기인한다고 보아야 하며, 1962年에 이面의 進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主要한 것을 듣다면 文書管理 行事의 統制 定例報告의 簡素化, 權限의 委任, 事務分掌制 카드作成統制 등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일은 지완되기는 했지만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본다.

나. 警察官의 數와 成分

(1) 警察數

우선 解放後 不幸히도 國土가 兩斷된 후에 南韓반의 警官의 數의 變遷을 檢討해 보려고 한다.

警 察 數

階級 年 度	警務官	總 警	警 監	警 衛	警 查	巡 警	合 計
1939 (全國)							21,972 ⁽¹⁴⁾ 12,314(南韓)
1940 (全國)							23,888 ⁽¹⁵⁾
1947							約 27,600 ⁽¹⁶⁾
1950 ⁽¹⁷⁾	19	179	595	2,005	6,369	28,842	48,010
1951	22	205	730	2,610	8,366	51,494	63,427
1952	23	209	767	3,299	8,480	50,649	63,427
1953	22	189	655	3,545	8,061	38,259	50,731
1954	23	189	655	3,545	8,061	38,228	50,731
1955	11	172	642	3,418	7,116	35,891	47,250
1956	10	176	617	3,329	6,825	28,080	39,037
1957	11	176	650	3,344	6,864	27,985	39,031
1958	11	176	650	3,344	6,864	27,962	39,007
1959	11	161	600	3,039	6,122	23,102	33,035
1960	11	161	600	3,039	6,122	23,102	33,035
1961	10	130	466	1,742	4,709	22,778	29,835
1962	11	134	424	1,806	4,606	22,934	29,910
1963	20	153	556	1,979	5,562	20,606	33,879
1964	24	153	556	1,978	5,562	25,609	33,882

(14) 玄圭炳, 「警察教育의 實態와 問題點」, 民主警察, 63號, 1956年 5月, p. 47.

(15) 玄圭炳, 韓國警察制度史, 서울, 民主警察研究會, 1955, p. 177.

(16) 張永福, 「公安局主管事務에 대하여」民主警察, 創刊號, 1947年 6月, p. 47.

(17) 1950年부터 1964年까지는 경찰통계년보, 1964年, p. 81.

以上에서 나타나는 特色을 보면

- ① 日政時に 비하여 警官의 數가 2倍로 급증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1940年만 해도 巡警 1人當 人口數가 1,138⁽¹⁸⁾人이었으며 全口의 數가 23,888人이었는데 1947年 5月에 이미 그 數를 南韓에서 능가하고 있다는데 알 수 있다. 더구나 解放直後 1945年 10月初에 일단 不正警官에 대한 整理가 있었다는 것을⁽²⁰⁾ 감안 할적에 短時日内에 大量의 人員數가 採用된 것을 알 수 있으며前述한 機構의 擴大와 一致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 ② 다음은 6.25와 同時に 다시 대폭 증원되었는데 이는 動亂에 의한 것이며 이것이 종식됨과同時に 다시 감원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解放後 6.25가 끝날때까지 反共으로 因한 量的擴大가 급격히 이루어졌다고 보며 따라서 質的인 低下가 심하였을 것이豫想된다.
- ③ 그후 계속 감원되어 오다 4.19, 5.16을 마지막으로 최소수에 達하였다가 1963年부터 다시 증원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高級警官의 數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理由로서는 첫째 犯罪發生件數를 그대로 比例的으로 생각할 必要是 없겠지만 形式的으로 볼 적에 5.16後 특히 權限의 擴大는 없으면서 業務量이 급증하여 1960年에 비하여 1964年에는 451% 증가하였다는 것⁽²⁰⁾ 둘째 警察의 橫暴를 統制하는 方法으로서 1948年後 계속적으로 견지된 機構, 人員豫算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약간 修正되어 가고 있다는 것. 세째 高級將校의 公職就任機會의 마련 등을 들 수 있겠다.

(2) 成分

成分을 年度別로 現在로서는 調査할 수가 없으나, 解放直後の 軍政時に 관하여 咸尙勳氏는 「……그것은 前職者에 대한 軍政當局의 우대다. 經驗을 重視하는 美軍當局은 경찰수뇌에 若干의 新人을 登用하였으나 大部分은 前職者로 充當하고……」⁽²¹⁾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또는 그當時의 幹部名으로 볼 적에 解放直後에 숙청은 있었으나 워낙 治安力이 약한데다 美軍들의 對日感情이 우리와는 달랐으며 거기다 左翼으로부터의 위협은 컸다고 하는 것이 日政時の 警官을 極少數의 高位幹部(趙炳玉, 張澤相 등)를 除外하고는 그대로 重用한理由라고 보겠으나 거기까지는 또 理解가 간다하더라도 이들의 代替 및 새교육을 받은 人員으로서 補充하는데 관해서 別로 진지한 努力이 적었다고 하는 것이 今日까지도 警察이 植民地下의 警察과 같은 國民의 不信任을 크게 脱皮 못한 큰 理由中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다음에 1959年(自由黨末期)의 警察幹부의 간단한 成分를 檢討하면 다음과 같다.

(가) 警察幹부(治安局 局, 課長, 地方警察局長)

(18) 玄圭炳, 韓國警察制度史, *op.cit.*, p. 177.

(19) 蔡元植, *op.cit.*, pp. 75.

(20) 金載厚, 「國家公務員定員概觀」*행정관리* 4卷 2號, 1965年 10月, p. 23.

(21) 咸尙勳, 「民主警察確立의 根本策」, 民主警察, 14號, 1949年 4月, pp. 30-1.

(1959年 現在：自由黨末)⁽²²⁾

1. 年齢

36—40 歳	41—45 歲	46—50 歲	51 歲 이상
6 人	6 人	1 人	2 人
40%	40%	6.7%	13.3%

2. 出身道

出身道	서울	京畿道	江原道	忠清道	慶尚道	全羅道	濟州道	以北	計
人數	1	2	1	2	5	2		2	15
(%)	6.66	13.33	6.66	13.33	33.33	13.33		13.33	100

3. 學歷

學歷	國民校卒	中學校卒	高等校卒	初大卒	專門卒	大學中退	大學卒	大學院卒	計
人數		2	2		1	1	9		15
(%)		13.33	13.33		6.66	6.66	60		100

4. 經歷

(1) 公務員으로서 全勤務年數(※ 解放後; 1945~1959)

勤務年數	10 年	11 年	12 年	13 年	14 年	15 年	計
人數	2	1	3	3	3	3	15
(%)	13.33	6.66	20	20	20	20	100

(2) 警察로서 勤務年數(※ 解放後; 1945~1959)

勤務年數	10 年	11 年	12 年	13 年	14 年	15 年	計
人數	2	1	3	3	3	3	15
(%)	13.33	6.66	20	20	20	20	100

(3) 解放前 公職者數⁽²³⁾

軍警 13(8人) 警察

(22) 禹仁基編, 行政幹部全貌, 서울, 國會公論社, 1960 年, pp. 64—69.

(23) *ibid.*,

(4) 警察幹部(治安局 局, 課長, 서울特別市 및 各道警察局長)⁽²⁴⁾

1. 年齡

年齡	31—35	36—40	41—45	46—50	51 ~ 上	計
人數	2	7	7	5	1	22
(%)	9.09	31.81	31.81	22.72	4.54	100

2. 出身道

出身道	서울	京畿道	江原道	忠淸道	慶尚道	全羅道	濟州道	以北	計
人數	9	2	1	4	5			1	22
(%)	40.9	9.09	4.54	18.18	22.72			4.54	100

3. 學歷

學歷	國民校卒	中學校卒	高等校卒	初大卒	專門卒	大學中退	大學卒	大學院卒	計
人數	1		1			2	11	7	22
(%)	4.54		4.54			9.09	50	31.81	100

4. 經歷

(3) 公務員으로서 全勤務年數

勤務年數	4年 10年	11年 15年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年以上	計
人數	1	3	2	6	1	1		1	1	1		1	2	2				22
(%)	4.54	13.63	9.09	27.27	4.54	4.54		4.54	4.54	4.54		4.54	9.09	9.09				100

(2) 警察로서의 勤務年數

勤務年數	1年	2	3	4	5	6	7	10	11	16	17	19	20	21	27	計
人數	1	1	3	3	1	1	1	1	1	2	1	1	2	2	1	22
(%)	4.54	4.54	13.63	13.63	4.54	4.54	4.54	4.54	4.54	9.09	4.54	4.54	9.09	9.09	4.54	100

(24) 總務處人事記錄카드에서

5. 宗教

宗 教	基督 教	天主 教	佛 教	敎 命	計
人 數	2	5	2	13	22
(%)	9.09	22.72	9.09	59.09	100

(다) 警察幹部(治安局, 特別市 및 各道警察局 現職局課長)⁽²⁵⁾ 1966. 9. 30. 現在

1. 年齢

年 齡	35 歲 이하	36~40	41~45	46~50	51 歲 以 上	計
人 數	9	20	30	10	4	73
(%)	12.3	27.3	41.2	13.7	5.5	100

2. 出身道

出 身 道	서 울	京畿道	江原道	忠清道	慶尚道	全羅道	濟州道	以 北	計
人 數	14	8	6	8	23	6	2	6	73
(%)	19.17	10.95	8.21	10.95	31.50	8.21	2.73	8.21	100

3. 學歷

學 歷	國民校卒	中學校卒	高等校卒	初大卒	專門卒	大學中退	大學卒	大學院卒	計
人 數	6	1	3	1	3	4	35	8	73
(%)	8.21	17.80	4.10	1.36	4.10	5.47	47.94	10.95	100

4. 經歷

(1) 公務員으로서 全勤務年數

勤務年數	4 年	11 年	16 年	17 年	18 年	19 年	20 年	21 年	22 年	23 年	24 年	25 年	26 年	27 年	30 年 以上	計
	10 年	15 年														
人 數	4	7	4	13	3	3	6	3	7	6	6	2	4	2	3	73
(%)	5.47	9.58	5.47	17.8	4.1	4.1	8.2	4.1	9.58	8.2	8.2	2.73	5.47	2.73	4.1	100

(25) *ibid.*,

(2) 警察로서의 勤務年數

勤務年數	2年	3年	4年	5年	6年	7年	10年	12年	16年	17年	18年	19年	20年	21年	22年	28年	31年	計
人 數	3	3	14	4	3	2	1	1	3	4	2	4	19	6	2	1	1	73
(%)	4.1	4.1	19.17	5.47	4.1	2.73	1.36	1.36	4.1	5.47	2.73	5.47	26.02	8.2	2.73	1.36	1.36	100

5. 宗教

宗 教	基 督 教	天 主 教	佛 数	敎 道	計
人 數	10	3	8	—	73
(%)	13.69	4.1	8.2	—	100

이러한 成分에 관한 資料에서 發見되는 特色的變化는

① 年齡에 있어 짚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自由黨 때 까지만 해도 日政時의 人物이 主動的役割을 하였으나 그후 2次에 걸친 큰 政治變革에 따른 영향을 특히 幹部들이 심하게 받은데 기인한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現在의 경우는 經歷에 있어 日政時의 有經歷者가 극히 적어졌다는 것은 기쁜 일이나, 反面에 너무 經驗이 적은 사람이 5.16後 증가하였다고 하는 것은今後에도 계속 문제가 될것으로 생각된다.

② 出身道의 경우는 變化가 別로 없는 것은 慶尙道가 계속 높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며 變化가 큰 것은 서울出身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환도후 10餘年이 경과하였다는 것이作用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以北出身이 감소한 것은 說明을 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全羅道出身이 감소하는 것은 문제시 되어야 하며 너무 一般公務員의 경우에 비하여 서울, 慶尙出身의 比重이 크다는 點에서 地域의 代表性이 弱化되어가고 있다고 보겠다.

(3) 學歷上으로는 向上되고 있음이 보이며 内容에 있어서 점점 解放後의 民主教育을 받은 者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特色的의 變化일 것으로 생각된다.

(라) 警官全員

다음은 警官全員의 간단한 成分的特色을 검토하려고 한다⁽²⁶⁾.

① 年 齡

年齢 年度	21—25歲	26—30歲	31—35歲	36—40歲	41—45歲	46—50歲	51以上	計
1953	8,099 (15.9%)	24,259 (48.8)	12,865 (25.3)	3,764 (7.4)	993 (2.0)	216 (50.)	35 (0.1)	50,721 (100)
1961	1,242 (4.37)	4,677 (16.48)	9,968 (35.13)	10,333 (36.42)	1,875 (6.6)	259 (0.91)	15 (0.05)	28,369 (100)
1964	1,654 (4.82)	8,278 (25.59)	6,762 (19.71)	12,112 (35.32)	4,383 (12.78)	561 (1.63)	42 (0.12)	34,292 (100)

(26) 年令, 學歷, 總勤續年限數 統計는 各年度 경찰통계년보에 서

② 學歷別

學歷 年 度	大學 (中退包含)	初大、專門	高 校	初 級 中	國 校	其 他	計
1953	986 (1.9%)	1,305 (2.6)	12,679 (25.0)	17,632 (34.8)	18,111 (35.7)	8 (0.08)	50,721 (100)
1961	2,361 (8.32)	1,016 (3.58)	96,69 (34.08)	10,424 (36.74)	7,919 (27.91)	25 (0.08)	28,369 (100)
1964	5,934 (17.3)	726 (2.11)	10,491 (30.59)	9,795 (28.56)	7,330 (21.37)	16 (0.04)	34,292 (100)

③ 總勤續年數別

年 數 年 度	1—4年	5—9年	10—14年	15年以上	計
1953	35,147 (69%)	14,751 (29%)	560 (1.1)	501 (0.9)	50,721 (100)
1961	11,606 (40.91)	9,790 (34.5)	7,492 (26.4)	501 (1.76)	28,369 (100)
1964	13,762 (40.13)	4,631 (13.5)	15,899 (46.36)		34,292 (100)
1965	13,141 (38.2)	8,142 (23.8)	13,118 (38.6)		34,401 (100)

이러한 資料에서 抽出되는 特色的變化는

- ① 年齡에서 1953 年까지 대량채용에 따라 젊은 층이 많았으나 그후 계속 新陳代謝가 없어 老齡화되어가다가 5.16 後 약간 완화되어가고 있는것 같다.
- ② 學歷上으로는 新陳代謝가 적었던 것에 비하면 월등히 向上되고 있다고 보겠으며 在職中教育을 받은 者의 數도 큰것으로豫想된다.
- ③ 總勤續年限數上으로는 계속 長期勤務者가 차지하는 比率이 커가고 있으며 5.16 後 약간 완화된 감이 있다.

다. 人事行政

人事行政에 관하여는 警官이 一般職에 속하고 있어 人事에 관한 法律이 따로 없으며 人事機關으로서는 美軍政時代에 人事課가 中央에 따로 신설되었다가 1948 年後에는 다시 日政時의 制度에 복귀하여 警務課內의 人事係로 축소되었으며 그간에 教育課가 盛衰를 무상히 한 것 外에는 別變化가 없으며 계속 심한 政治的影響을 크게 받고 있으며 또한 幕僚로서 보다는 오히려 他部處의 경우와同一하다고 보겠으며 아직 專門化를 위한 職位의 分類는 이룩되고 있지 못하여 警察機能의 能率化에 지장이 많다고 생각된다⁽²⁷⁾.

(27) 趙義英, 「警察人事行政에 대한 卑見」, 民主警察, 92號, 1956年4月, pp. 38—40.

(1) 採用

警官의 採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特採와 公開募集에 의한 것의 數라고 생각되어 우선 이 數를 파악해 보려고 한다.

採用方法別數⁽²⁸⁾

階級 年度方法	警務官	總 警	警 監	警 衛	警 査	巡 警	合 計	(比率)
特採 1951 公開							5,186 (63.69) 2,956 (36.31)	8,142 (100)
特採 1952 公開							7,018 (54.2) 5,929 (45.79)	12,947 (100)
特採 1953 公開	1 (0.01)	1 (0.01)	17 (0.24)	35 (0.49)	214 (3.05)	6,742 (96.17) 4,530 (100)	7,010 (60.74) 4,530 (39.25)	11,540 (100)
特採 1954 公開		1 (0.04)	2 (0.08)	42 (1.72)	160 (6.56)	2,214 (90.84) 18 (100)	2,419 (99.26) 18 (0.74)	2,437 (100)
特採 1955 公開				1 (0.04)	27 (1.16)	1,549 (66.99) 735 (100)	1,577 (18.2) 735 (31.79)	2,312 (100)
特採 1956 公開			1 (0.07)	7 (0.54)	44 (3.34)	1,228 (95.93) 1,180 (100)	1,280 (52.03) 1,180 (95.16)	2,460 (100)
特採 1957 公開			2 (0.3)	5 (0.75)	22 (3.33)	630 (95.59) 611 (100)	659 (51.88) 611 (48.11)	1,270 (100)
特採 1961 公開		6 (2.03)	1 (0.33)	14 (4.74)	11 (3.72) 92 (2.66)	263 (89.15) 3,354 (97.33)	295 (7.88) 3,446 (92.11)	3,741 (100)
特採 1963—66 (10月5日) 公開	13 (副理事官 2名包含) (2.29)	10	7	44	34 (6) 169 (1.2)	458 (80.91) 1,3845 (98.79)	566 (3.88) 14,014 (96.11)	14,580 (100)

警官의 採用에 관해서는 解放直後의 美軍政에서 公開採用을 原則으로 하고 이를 巡警과 幹部(警衛)級에 二元的으로 하는 것을 原則으로 일찍이 各各 1946年 12月 및 1947年 4月에 규정을 制定하였으나 그후의 實際運營을 보면 극히 不滿足스러웠다고 할 수 있다. 이러

(28) 1951年부터 1961年까지는 各年度 경찰통계년보에서 1963—66는 治安局에서 直接 얻은 것임.

한 採用面의 特色的 變遷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募集方法, 試驗方法에 있어서는 若干의 變化가 있었으나 대스러운 것은 못되고 흥미있는 것은 時期에 따라 응모자수의 變化가 심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美軍政時에는 日政, 左翼의 영향으로 아주 低調하였다고 보며 이것이 1948年後 약간 回復되다가 6.25動亂을 기하여 兵役과 關聯되어 급증하는 人員數를 우수한 人材로 充員하는데 용이하였으며 그후는 教育을 받은 者와 除隊軍人으로 구성된 격증된 失業者가 계속 뒷받침했다고 볼 수 있다.⁽²⁹⁾.

② 美軍政時부터 6.25動亂때 까지는 急增에 응하기 위하여 警官으로서의 事前訓練(pre-service training)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質의低下를 초래했으며 이는 量的充足에만 급급한데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③ 質의 向上을 위해서 무엇보다 希求되는 것은 公開採用方法인데 上記한 統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自由黨末期까지 극도로 문란하여 特採가 차지하는 比率이 커으나 4.19 후 公開採用方法이 確立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④ 特採의 경우는 또 하나 곤난한 것이 上位階級에 처음부터 任用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1963年에 유난히 심하였다고 하는 것이 公開方法의 強化를 이루한 功이 무너지는 理由라고 본다.

警察官新規採用統計表

(66. 10. 5)⁽³⁰⁾

年度 階級	6 3	6 4	6 5	6 6	計
理 事 官	—	—	—	—	—
副 理 事 官	• 1 (50)	1 (50)	—	—	2 (100)
警 務 官	11 (100)	—	—	—	11 (100)
總 警	10 (100)	—	—	—	10 (100)
警 監	5 (71.42)	—	2 (28, 57)	—	7 (100)
警 衛	141 (69, 19)	53 (24, 88)	18 (8, 45)	1 (0, 46)	213 (100)
警 查	5 (14, 7)	24 (70, 58)	4 (11, 76)	1 (2, 94)	34 (100)
巡 警	5,168 (36, 13)	1,252 (8, 75)	2,047 (14, 31)	5,836 (45, 8)	14,303 (100)
計	5,341 (36, 63)	1,330 (9, 12)	2,071 (14, 2)	5,838 (40, 04)	14,580 (100)

(29) 蘇文燮, 警察公務員의 募集制度, 行政大學院, 碩士論文, 1963年, pp. 58—56.

(30) 治安局에서

(2) 能力發展

① 우선 訓練機構面에서 前述한 것과 중첩을 피하면서 검토하면 美軍政時 中央과 地方別로 訓練機關을 창설하였으며 이것으로서 動亂이 끝날 때까지 大量의 訓練을 담당하다가 1954 年에 警察專門學校로 統合하였다가 다시 5.16 후에 1962 年 3 月에 地方訓練機關이 부활되어 強化의 길을 걷고 있다.

② 訓練의 内容, 實績으로 보면 1949 年까지 계속 民主國家인 韓國의 警察官이 지녀할 姿勢에 치중하면서 專門化의 길을 걸어갈 준비를 다하였다가 6·25로 急轉換하여 軍事教育에 치중되어 1954 年까지는 事實上 新規採用者の 訓練에 치중되었으나 그나마도 1週乃至 1個月의 訓練이었으므로 너무 단기적이었다⁽³¹⁾, 따라서 業務에 익숙하지 못한 者를 많이 배출한 것이며 더구나 軍隊와 다른 것은 動亂이 끝나자 마자 訓練機關은 單一機關으로 統合되었으며 訓練의 必要性은 軍隊와 同一하면서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1962 年까지 그 業績은 군대에 비하여 보잘것 없다는 것이다.

1954 年後의 訓練實績⁽³²⁾

訓練方法 年 度	普 通 教 育		初 等 教 育	
	新 任	補 修	新 任	補 修
1954	—	485	—	245
1955	—	523	402	1,348
1956	—	860	966	2,337
1957	490	51	440	1,799
1958	—	81	417	1,391
1959	56	55	142	782
1960	49	—	1,201	236
1961	—	77	2,139	—
1962	39	—	635	908
1963	—	—	—	12,819
1964	—	—	—	12,906
1965	—	—	—	11,708
1966(9·26))	—	—	—	—

그러나 5·16 後 量的으로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内容에 있어서도 行政의 能率化를 위한 專門化와 行政技術教育에 比重이 커졌으며 또한 高級警察官도 訓練을 받았다고 하는 점에서

(31) 朴根容, 「警察官의 教養問題」, 民主警察, 創刊號, 1946 年 6 月, p. 95.

(32) 鄭石謨, 警察公務員의 教育訓練, 行政大學院 碩士論文, 1962 年, pp. 246—58 1963 年後는 治安局에서 수집하였다.

特色的變化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訓練의 效率化를 위한 自發的 意慾이 계속 低調함은 變함이 없다고 보아야 겠으며 5·16 後에 是正될 것 같다가 實을 겉우지 못하였다.

③ 海外派遣訓練이 1952 年 末부터 시작하여 1962 年末까지 不過 112 名이 받았으나 政變에 따라 離職하고 50 名程度 밖에 現職에 없으며 그나마도 받은 技術教育과 一致하지 않는 補職을 갖고 있는 例가 허다하다고 하며⁽³³⁾ 이는 軍隊는 고사하고 一般行政職에 비하여도 너무나 적은 숫자이며 거의 能力向上이 방각되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라고 본다.

④ 升進制度로서 特記할 것은 1953 年부터 警察官升進試驗規程이 규정되어 警查, 警衛, 警監升進試驗이 1 年에 1 回 실시되게 된 것이겠으나 警監升進試驗은 第3回가 1960 年에 실시된 것으로 보아 每年 실시되지 않았으며 今後 이것을 규정대로 實施할 것이 希求된다. 警察의 경우는 特異하게 試驗에 의한 升進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면 能力에 의한 것은 우선 고사하고 최소한도 情實의 排除라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點에서 높이 평가하여야 하며 이의 보다 큰 實效를 겉우기 위해서는 試驗의 内容이 實務와 밀접히 관련된 것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⑤ 轉補

轉補야말로 우리 나라에서 지난 20 年間 아무런 變化, 發展이 없었던 分野라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옛날(최소한도 李朝)부터 이를 統制, 腐敗防止의 手段, 또는 個人的 特惠를 주기 위한 手段으로 利用하여 왔다. 따라서 自然히 빈번한 轉補가 제일 큰 特色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⁴⁾

이러한 現象은 下級警察官吏의 경우만이 아니라 警察의 責任者인 治安局長의 경우도 그러하다. 최근 在職期間이 길어지는 것 같음은 축하할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歷代治安局長在任期間⁽³⁵⁾

代數	期 間	代數	期 間	代數	期 間	代數	期 間
1 (1948年)	14個月	7	2個月	13	16個月	19	1個月
2	2	8	4	14	5	20	29
3	2	9	13	15	12	21	8
4	1	10	6	16	1	22	26 (1966年 9月)
5	12	11	26	17	6		
6	9	12	10	18	6		

(3) 勤務

警官이 社會의 秩序維持를 위하여 過勞하고 있으면서도 市民들로 부터 감사의 表示를 받

(33) 徐載根, 警察行政學, 서울, 三中堂, 1963, p. 298.

(34) 南大門署의 경우 1965 年中에 總員 400 名中 轉出人이 380 을 해아리고 있다.

(35) 治安局에서 수집.

지 못하는 理由는 그들의 勤務態度로 인한 것이라고 보겠는데 아직도 新聞紙上을 통해서 불적에 不美스러운 일이 자주 보도된다.

이러한 것의 原因은 그들의 態度 能力의 잘못에도 있지만 個人的 힘으로서는 극복하기 힘든 報酬, 職務의 性質 등에도 있다고 본다. 報酬面에 있어서 지난 20 年間 向上의 빛이 최근 까지 보이지 않았으며, 언제나 生活費는 職務遂行을 통해서 自給하여야 하며 그들의 態度, 能力 또한 특히 6·25 動亂까지 採用된 者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으며 그 후에도 情實의 特採는 계속되어(약간 감소되고 있지만) 質的向上을 기하고 있지 못한데다가 職務의 性質은 權力的인 것인데다 傳統的인 特權意識이 사라지지 않아 자주 不美스러운 근무태도를 나타내게 되어 警察內部에서는 懲戒對象이 자주 되고 國民으로부터는 비난의 對象이 된다. 그동안의 懲戒에 관한 統計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 하나 附加할 것은 이들의 경우 6·25 直後인 1950年 7月 22日에 非常時警官特別懲戒令이 大統領의 緊急命令으로 제정되어 특히 他公務員과 다른 特色을 가지게 되었다.

警察官懲戒統計⁽³⁶⁾

年 度	種 目	統 計	免 職	降 位	停 職	減 個	遣 貴	其 他
1950 (10—12月)		9448 (100)	5885 (62.79)	481 (5)	213 (2, 2)	1490 (15, 7)	444 (4, 6)	935 (9, 8)
1951		16,680 (100)	12,079 (72, 41)	127 (0, 76)	58 (0, 34)	2,415 (14, 47)	911 (5, 45)	1,090 (6, 53)
1952		13,408 (100)	9,176 (68, 43)	79 (0, 58)	58 (0, 43)	3,002 (22, 38)	975 (7, 27)	118 (0, 88)
1953		13,908 (100)	8,954 (64, 38)	42 (0, 3)	51 (0, 36)	3,254 (23, 39)	766 (5, 5)	841 (6, 04)
1954		7,657 100	3,608 (47.12)	48 (0, 62)	16 (0, 2)	2,534 (33.09)	880 (11, 49)	573 (7, 48)
1955		7,278 (100)	3,304 (45, 39)	31 (0, 42)	18 (0, 24)	2,466 (33, 88)	1,115 (15, 32)	342 (4, 69)
1956		6,575 (100)	2,614 (39, 75)	10 (0.15)	8 (0.12)	2,273 (34, 57)	1,345 (20, 45)	425 (6, 46)
1957		6,179 (100)	1,305 (29, 11)	15 (0, 24)	9 (0, 14)	2,855 (46, 2)	1,912 (30, 94)	83 (1, 34)
1961		3,850 (100)	1,027 (26, 67)	2 (0, 05)	11 (0, 28)	1,080 (28, 05)	1,218 (31, 63)	89 (2, 31)
1962		2,733 (100)	941 (34, 43)	—	19 (0, 69)	792 (28, 97)	864 (31, 61)	—
1963		2,313 (100)	245 (10.59)	28 (1.21)	542 (23.43)	484 (20.92)	1,014 (43.83)	—
1964		2,955 (100)	233 (7.88)	54 (1.82)	613 (20.74)	707 (23.92)	1,348 (45.61)	—

(36) 各年度別경찰통계년보에서

警察官懲戒原因別統計⁽³⁷⁾

年 度	原因別	職權濫用	收 賄	命令不 服 役	職務拋棄	職務怠慢	威信失態	規 律	其 他	合 計
1953		253 (1.81)	312 (2.24)	1,363 (9.8)	6,093 (43.8)	1,459 (10.4)	2,075 (14.91)	1,260 (9.05)	1,087 (7.81)	13,908 (100)
1954		174 (2.27)	238 (3.1)	609 (7.95)	2,259 (29.5)	1,021 (13.33)	1,739 (22.71)	1,131 (14.77)	486 (6.34)	7,657 (100)
1955		233 (3.2)	173 (2.37)	729 (10.01)	2,156 (29.62)	1,234 (16.95)	1,327 (18.23)	1,106 (15.19)	320 (4.39)	7,278 (100)
1956		191 (2.9)	119 (1.8)	517 (7.86)	1,037 (15.77)	1,622 (24.66)	1,518 (23.08)	1,193 (18.14)	328 (4.98)	6,575 (100)
1957		357 (5.77)	126 (2.03)	405 (6.55)	392 (6.34)	2,270 (36.73)	1,556 (25.18)	1,058 (17.12)	15 (0.24)	6,179 (100)
1961		126 (3.27)	189 (4.9)	60 (1.55)	224 (5.81)	1,475 (38.28)	1,210 (31.4)	566 (14.68)	— —	3,853 (100)
1963		80 (3.45)	66 (2.85)	50 (2.16)	77 (3.32)	963 (46.63)	679 (29.35)	289 (12.49)	109 (4.71)	2,313 (100)
1964		158 (5.34)	71 (2.4)	85 (2.87)	9 (0.3)	1,271 (43.01)	876 (29.64)	276 (9.34)	119 (4.02)	2,955 (100)

以上의 懲戒에 관한 統計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特色的變化를 찾아 볼 수 있다.

① 우선 懲戒件數에 있어 6·25 動亂時 최고로 많았다가 점차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當時 特別히 많았던 理由를 察警數가 급증한 것. 따라서 이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하여 質의 으로 低下하였으며 動亂時의 規律이 이완되기 쉬운 社會雰圍氣를 가지고 있었으며 끝으로 特記할 것은前述한 非常時警察官特別懲戒令의 영향이라고 보며 6·25의 종식과 더불어 警察官이 量的 質의 으로 정리되었으며, 社會秩序의 安定이 이룩됨에 따라 감소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 같다.

② 懲戒種類별로 나타나는 것으로는 重한 것은 급속도로 격감되고 있는데 비하여 輕한 것은 그러하지 않으며 오히려 謾責같은 것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重한 것으로부터 輕한 것으로 轉換되어가고 있다고 보겠으며 이에는 懲戒事由의 内容이 달라진 것이 역 시 主因이라고 부어야겠다.

③ 懲戒原因별로 보면 職權濫用 職務怠慢, 威信失墜등이 相對的으로 증가하였다 보아야 겠으며, 反面에 命令不服從, 職務拋棄등은 현저히 低下하였다 보아야 겠다. 相對的으로 별變化가 없는 것은 收賄, 規律紊亂등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統計에서 알수 있는 것은 아직도 對民關係에 있어 별改善이 없다는 것이다.

以上 몇 가지 特色의變化를 검토하였는데 점차적으로 懲戒件數가 감소되어가고 있지만 他

(37) *ibid.*,

公務員에 비하면 懲戒比率이 아직도 훨씬 높다고 하는 것은 1965年 1月 1日 부터 6月 30日 까지의 統計로서도 充分히 立證된다고 보겠는데 그 數를 보면 內務部의 公安關係만이 1270 件인데 비하여 行政府全體가 不過 2606 件에 不過하다는 것이다⁽³⁸⁾.

그리므로 비교적 懲戒件數가 감소한 최근에(4.19後) 任命된 學士警察의 輿論에서도 懲戒가 너무 가혹하다가 11%이며 他에 비하면 가혹하다가 80%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³⁹⁾. 이러한 事情은 日本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다르다. 日本의 警察官數는 1961年에 約 135,000 名인데 總懲戒件數가 506이며 그中 免職이 不過 11 名뿐이라는 것이다⁽⁴⁰⁾.

이러한 事情은 우리나라의 警察의 質이 얕으며 士氣가 그동안 약간의 기복은 있었으나 大體로 얕은데다 報酬의 非適正이 큰 原因이라고 생각된다.

라. 財務行政

지금까지 行政管理面에서 검토한 것을 통해서 알수있는 바와 같이 몇가지 事項을 除外하고는 거의 治安을 擔當하는 警察로서 그 機能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힘들게 되어있는 점이 많았는데 여기의 財務行政도 그 예를 벗어나지 않는 가장 特徵的인 事例라고 말할수 있다.

(1) 豊 算

우선 年度別 豊算規模의 變遷을 檢討하기로 하겠다.

警察豫算額의 變遷⁽⁴¹⁾

額 數 年 度	總 額 (歲 出)	物 價 指 數
1948	2,409,864,188.98 圓	0.726
1949	10,610,27800.00 "	0.992
1950	30,275,570,950.00 "	—
1951	56,683,261,200.00 "	—
1952	1,07,644,593.00 "	21.2
1953	5,161,904,717.00 "	26.5
1954	11,070,521,989.00 "	34.0
1955	15,591,739,220.00 "	61.5
1956	— " "	81.0
1957	15,009,614,000.00 "	94.1

(38) 行政 관리, 1966年 3月, No. 16, p. 101.

(39) 鄭時煥, 韓國警察의 士氣의 관한 研究, 碩士論文, 行政大學院, 1965年, p. 88.

(40) 李奎燮, 「外國警察본대로 느낀대로」 警察, 2卷 1號, 1963年 1月, p. 28.

(41) 1948年부터 1955까지는 내무 행정 정치적 사, *op.cit.*, p. 397, 그以後의 것은 연도별 통계년보 및 鄭石謨, 「韓國警察에의招待」, 警察, 3卷 12號, 1964年 12月, p. 30. 物價指數는 總濟企劃院, 韓國統計年鑑, 1965年

1 9 5 8	17,176,964,100.00 //	88.2
1 9 5 9	21,283,952,200.00 //	90.3
1 9 6 0	21,669,371,600.00 //	100.0
1 9 6 1	26,966,836,300.00 //	113.2
1 9 6 2	3,065,901,600.00 원	123.8
1 9 6 3	3,202,876,910.00 //	149.3
1 9 6 4	3,500,920,800.00 //	206.1

다음에 警察豫算額中 治安局의豫算이 全體豫算中에 차지하는 比率의 變化와 또한 人件費와 物件費의 比率의 變化를 검토하여 보려고 한다.

警察豫算項目別變遷⁽⁴²⁾

項目 年 度	治安局豫算 總豫算額	人件費物件費
1 9 4 9	$\frac{1,085,610,500}{10,610,278,200} = 1,023$	
1 9 5 0	$\frac{2,018,221,050}{20,275,570,950} = 6.66.$	
1 9 5 1	$\frac{5,296,147,600}{56,683,261,200} = 9.34$	
1 9 5 2	$\frac{139,403,549}{1,073,644,593} = 12.9$	
1 9 5 3	$\frac{674,098,625}{5,161,904,717} = 13.00$	$\frac{2,173,423,471}{2,833,322,880} = 76.7$
1 9 5 4	$\frac{1,677,096,839}{11,070,521,989} = 15.14$	$\frac{4,911,621,949}{4,249,449,944} = 11.5$
1 9 5 5	$\frac{2,386,271,312}{15,591,739,221} = 15.3$	$\frac{8,856,840,900}{4,966,270,100} = 17.8$
1 9 5 7	$\frac{1,804,940,600}{15,009,614,000} = 12.02$	$\frac{9,772,519,500}{5,237,094,500} = 18.66$
1 9 6 3	$\frac{350,388,783}{3,202,376,910} = 14.00$	
1 9 6 4	$\frac{31,166,460}{350,920,800} = 6.9$	$\frac{2,785,359,700}{628,847,100} = 43.97$

以上의 年度別統計에서 몇 가지 特色의 變化를 發見할 수 있는데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豫算總額이 6·25 前後해서 증액되는 정도가 크다가 오히려 그후 物價上昇에 비교하여

(42) *ibid.*,

불적에 별로 증액하지 못하였으며 行政府의 他部處에 비교하여 보는 경우 역시 가장豫算의 궁핍을 느끼고 있는 데가 警察인 것 같다. 그 理由로서는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建國當初부터 警察은 左翼政爭의 禁物이 되거나 또는 그후에도 與野政爭의 희생물이 되어 左翼系나 野黨側에서는 警察의 弱化를 至上으로 하여 鬪爭하여 왔으며, 그의 具體的인 方案으로서 나타난 것이 人員數, 豫算額의 삭감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內務行政擔當者は 協商하는데 있어 大體로 이를 받아드리고 딴것을 살리는 方案을 많이 取해 왔다. 그 理由는 이를 받아드리는 것이 그들을 만족시키는 가장 效果的인 方法임과 동시에 그와 같이豫算이 깎여도 警察行政은 自體調達(不正方法)에 의하여 任務遂行이 무난히 이루어질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태여 警察豫算의 增額 適正化에 크게 努力않했다고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事情은 비단 경찰의 경우만이 아니라 大體로 權力機關 利權關係가 큰문제를 다루는 機關의 경우 共通의 現象으로서 發見된다고 생각되며 극히 不合理하며 構造的으로 不正을 公認하고 들어가는 태도라고 생각된다. 이와 동시에 또 하나의 理由는 6·25와 同時에 戰亂收拾費라고 하는 것이 1953年까지 特別會計로서 計上되고 있었는데 이 額數가⁽⁴³⁾ 1950年에 15,577,635,200 圓으로서 全豫算額의 約 50%를 초과하고 있었으며 1951年에는 8,895,295,400 圓으로서 全 算額의 約 16%에 육박하는 額數이며 1952年에는 10,533,987 900 圓으로서 全豫算額의 約 10%에 해당되며 또한 1953年에는 戰亂收拾費가 西南地區戰鬪 警察隊로 改編됨과 동시에 이에 包含하게 되었는데 이의豫算이 全豫算의 17.7%(469,285,862 圓)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거의 監查를 받지 않고 使用할수 있는 액수이므로 行政責任者는豫算不足의 不便을 거의 느끼지 않고 있었으며 따라서 一般會計豫算의 年度別增額에 관하여 비교적 무관심하였으며 따라서 他行政部處의 경우와 같이 적극적으로 年度別引上을 위하여 努力を 안하다 6·25의 종식과 동시에 이러한豫算이 總體的으로 削除되니까 갑자기豫算不足에서 오는 궁핍을 심하게 느끼지만 우리나라의豫算編成이 언제나 前年度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동안의 不足을 一時에 補充한다는 것이 不可能함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②一般的으로 警察豫算中 一線機關에 비하여 治安局의豫算이 차지하는 比重이 크다고 하는 생각이支配하고 있으나 統計上으로 보면 大體로 10%内外를 上下하고 있어 이것만으로서는 알수 없으나 機能과 아울러 고려할수 없어 여기서는 客觀的으로 判斷하기 어려우나 一線機關으로 갈수록 機能의 擴大에 비하여豫算의 不足이 더 극심한 現象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으며 이러한 點에서 統計比率이 機能에 一致되려면 治安局이 차지하는 比重이 감소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③ 다음 警察豫算을 人件費(俸給, 賃金, 旅費, 諸支出費, 情報費)와 物件費(運搬費, 通信費, 賃借料, 印刷費, 營繕費, 消耗品費, 備品費, 施設費)로 나누어 보는 경우 大體로 점차

(43) 내무부, 내무행정지적사, *ibid.*, pp. 68—71, 1953年的 경우는 경찰통계년보, 1953年 p. 92에서,

적으로 人件費가 차지하는 比率이 커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이러한 現象은 여러가지로 說明이 될수 있겠는데 陰性收入의 감소로 職員들이 公式的인 報酬에 기대하는 바가 커감에 따라 報酬의 適正化가 이루어져가는 데도 있으며 또한 戰後의 破壞된 것을 거의 복구하여 이제는 그려한 費用이 支出되지 않게 되었음과 동시에 警察行政에 요구되는 새로운 施設裝備上의 改善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表現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2) 裝備(通信, 車輛, 銃器)

警 察은 무엇보다도 그의 任務上 高度의 機動力を 가져야 한다고 하며 따라서 무엇보다 여기의 3大裝備는 가장 긴요한 行政手段이라고 볼 수 있음과 同時에 그것을 갖추는데 費用이 많이 所要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의 變化를 個別的으로 더듬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通信面을 우선 보기로 하고 이에 관한 統計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⁴⁴⁾.

警 察 有 線 通 信 施 設

種 目 年 度	交 換 臺			電 話 機			搬送電話機
	共 電 式	磁 石 式	計	共 電 式	磁 石 式	計	
1953			263 (100)	1,327 (17.55)	6,231 (82.44)	7,558 (100)	
1954			292 (100)	1,853 (21.57)	6,735 (78.42)	8,588 (100)	
1955			260 (100)	1,846 (22.05)	6,254 (74.71)	8,370 (100)	
1956			215 (100)	4,909 (49.98)	4,912 (50.01)	9,821 (100)	
1957			210 (100)	5,954 (54.26)	5,028 (45.82)	10,972 (100)	
1958	110 (54.125)	92 (45.54)	202 (100)	7,330 (62.31)	4,433 (37.68)	11,763 (100)	13
1959	105 (52.23)	96 (47.76)	201 (100)	6,952 (60.02)	4,630 (39.97)	11,582 (100)	6
1960	120 (60.30)	79 (39.69)	199 (100)	6,795 (62.32)	4,107 (37.67)	10,902 (100)	18
1961	120 (61.85)	74 (38.14)	194 (100)	5,874 (62.29)	3,555 (42.11)	9,429 (100)	25
1963			194 (100)			10,368 (100)	52
1964			195 (100)			10,498 (100)	52

(44) 각년도별 통계년보에서

警 察 無 線 通 信 施 設

種目 年度	施設個所數	送受信機 (短波包含)	發 電 氣	テレ フ リ ン テ	電送寫眞機	錄 音 機	ペ イ ネ
1953	196	749	183				
1955	219	883	208				
1956	223	886	214				
1957	228	1,061	192				
1958	254	1,108	195	12	5	22	
1959	395	1,125	248	12	1	22	
1960	388	1,082	282	12	5	24	
1961	430	1,153	282	24	5	24	
1963		1,153	212	67	8	33	15
1964		1,353	216	67	8		15

以上과 같은 通信施設面에 있어서의 몇가지 特色的인 變化를 든다면

① 解放前까지는 有線만이 있었지 無線施設은 全無하였는데 美軍政時 이의 重要性이 강조되어 1945年 12月에 無電施設이 창설되기 시작하였으며 더구나 通信局이 설치되어 그밑에 有線課와 無線課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들이 이를 강조한 것을 알수 있었으며 이들의 功은 크다고 보아야겠다.

② 우리나라의 有線은 遞信部와 別個로 유지되어 왔다고 하는 것이 特色이며 事實上이의 유지비가 막대하여 근자에 이르러 統合이 이루어 져가고 있다.

③ 有線, 無線을 막론하여 다 같이 警察行政分野에서 제일 크게解放後 量的 質的으로 變化가 있었다고 보면 時期的으로 보아 6·25後 1956年 1957年, 1958年에 크게 進展이 있었라고 볼수 있으며 이는 大部分 美國援助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特色이다. 이에 따라 量的으로도 증가했지만 質的으로도 새로운 施設이 많이 導入되었음을 알수있다.

(나) 車輛關係를 보면 다음과 같다.

警 察 車 輛 數 (45)

車種 年度	乘用車	型	쓰리 쿠타	트럭	其 他	總 計
1952	32 (2.94)	243 (22.39)	172 (15.85)	219 (20.18)	319 (29.4)	1,085 (100)
1953	34 (2.83)	432 (35.97)	196 (16.31)	205 (17.06)	334 (27.81)	1,201 (100)

(45) *ibid.*,

1954	30 (2.35)	454 (35.66)	198 (15.55)	212 (16.65)	379 (29.77)	1,273 (100)
1955	21 (1.78)	409 (34.7)	171 (14.52)	385 (32.71)	191 (16.22)	1,177 (100)
1956	18 (1.89)	360 (37.81)	140 (14.7)	323 (33.92)	111 (11.65)	952 (100)
1957	18 (2.02)	357 (40.2)	131 (14.75)	317 (35.69)	65 (7.31)	888 (100)
1958	60 (6.16)	452 (46.4)	130 (13.34)	322 (33.05)	60 (6.16)	974 (100)
1959	19 (1.85)	513 (50)	132 (12.86)	314 (30.6)	67 (6.53)	1,026 (100)
1960	13 (1.25)	502 (48.31)	140 (13.47)	313 (30.12)	71 (6.83)	1,039 (100)
1961	34 (4.04)	313 (37.21)	122 (14.5)	118 (14.03)	254 (30.2)	841 (100)
1962	35 (3.9)	342 (38.16)	121 (13.5)	99 (11.04)	299 (33.37)	896 (100)
1963	57 (4.17)	659 (48.31)	263 (19.28)	86 (6.3)	299 (21.92)	1,364 (100)
1964	66 (5.01)	609 (46.24)	263 (19.96)	79 (5.99)	300 (22.77)	1,317 (100)

6·25動亂中에 여러 잡동산이 車輛을 合하여 증가하였으나 이들이 老朽化함에 따라 감소되었다가 역시 1958年부터 援助에 따른 증가현상이 나타나다가 다시 4·19, 5·16後에 급격히 감소되었으나 다시 1963年부터 증가하는 變化를 보이고 있으며 이中 제일 크게 量의 으로 變化한 것이 짚이라고 생각된다.

(다) 銃器의 경우를 보면

警 察 銃 器 保 有 數 ⁽⁴⁶⁾

年 度	小 銃		重 火 器		計
	美 式	其 他	美 式	其 他	
1952	94,344 (80.6)	19,235 (16.43)	1,136 (0.97)	2,337 (1.99)	117,052 (100)
1953	89,663 (83.53)	14,646 (13.64)	696 (0.64)	2,333 (2.17)	107,338 (100)
1954	86,087 (82.45)	8,960 (9.15)	668 (0.68)	2,142 (2.18)	97,857 (100)
1955	78,997 (88.3)	7,935 (8.86)	582 (0.65)	1,947 (2.17)	89,461 (100)
1956	67,065 (90.24)	5,205 (7.00)	583 (0.78)	1,509 (2.03)	74,312 (100)

(46) *ibid.*,

1957	66,627 (97.32)	5,511 (8.05)	340 (0.49)	1,788 (2.61)	68,415 (100)
1961	62,956 (90.11)	6,133 (8.77)	372 (0.53)	399 (0.57)	69,860 (100)
1963					42,497 (100)
1964					44,616 (100)

銃器數가 6·25 動亂中 捨得한 것이 많아 數가 크게 증가했다. 그中 많은 것이 日製 打製이었는데 그것이 점차 老朽化함에 따라 小銃이나 重火器의 경우 其他項目이 급속도로 감소되어 갔으나 警察의 主要武器인 칼빈小銃 拳銃은 각각 오히려 증가하여 갔으며, 前者の 경우는 1952年에 28320으로부터 1964年에 32357로 증가했으며 後者の 경우는 1954年에 4242로부터 1964年에는 7532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全體數로 보면 감소했지만 質的 内容의 으로 보면 큰 變化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것 같다.

3. 機能別行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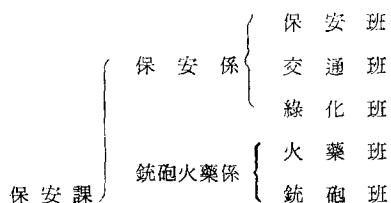
警察이 擔當하는 機能은 時代의 性格에 따라 菲연적으로 变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면에 있어서는 同一한例에 속한다고 생각된다. 警察이 담당하는 機能을 여기서는 便宜上 保安, 警備, 情報, 搜查등으로 分類하여 檢討하려고 한다.

가. 保安警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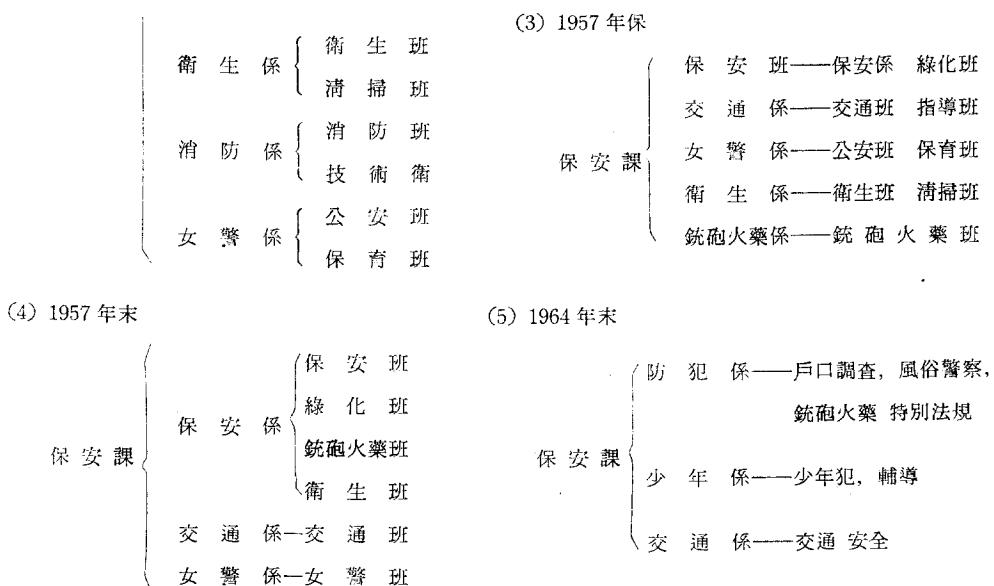
警察에 있어 保安行政이란 事實上 警察의 本來의 任務中 가장 中樞의 部分을 차지한다고 보겠으며 따라서 時代의 政治的 性格에 따라 警察의 機能도 變遷하는 것이므로 保安警察의 경우도 機能面에서 가장 他分野에 비하여 많이 變化하였다고 보아야 할것 같다. 우선 保安警察을 擔當하는 治安局의 保安課의 構成內容의 變遷을 기구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⁴⁷⁾

(1) 1948年 保安課

(2) 1953年末



(47) *ibid.*,



이러한 機構의 變革에서 파악될수 있는 機能上의 몇가지 主要한 變遷을 더듬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① 第一 變化가 심한 것이 衛生關係業務이다. 日政時에 물론 保安警察이 이를 다루었으나 解放後 美軍政時에 이러한 行政警察은 警察以外의 行政部處에서 擔當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警察은 本來의 秩序維持 즉 狹義의 保安業務에 국한하는 美國의 例를 따라 1945年 9月 24日字 軍政法令 第1號「衛生局設置에 關한 件」에 의하여當時의 保健部 厚生局으로 移管되어 계속 그대로 나가다가 6·25動亂과 同時に 1950年 10月 18日字로 다시 警察에 移管되었다가 다시翌年 1951年 8月 24日字로 保健部로 복귀했으며 또 1953年 12月 14日字로 内務部에 移管되었다가⁽⁴⁸⁾ 5.16後保健所로 移管되었다⁽⁴⁹⁾. 이와 같이 여러번 移管된 것은 過渡期의 현상을 표시하는 것이겠으나 根本的으로는 가장 利權이 큰業務이므로 그때 그때의 責任長官의 力量이 달라짐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어떠한合理的な理由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힘들것 같으며 가장 利權多tom의 典型적인 경우라고 하겠다.

② 交通警察分野에서는 保安課內에 交通係가 있었다 없었다 하였지만 車輛檢査 및 團束을 계속 警察이 장악하였으며 一時 1952年 8月에 交通部가 車輛檢査權을 장악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결국 1960年 2月 1日字로 交通部로 이관되어⁽⁵⁰⁾ 이 分野에서도 警察에서는 衛生의 경우와 같이 權限이 축소되어 보다 순수한 秩序維持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48) 内무행정 정치적사, op.cit., pp. 136—137.

(49) 安甲瀆, 警察實務全書, 서울, 政友社, 1963, p. 162.

(50) 16次 國務會議의 決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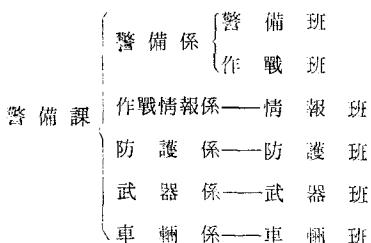
③ 防犯 少年 關係業務을 重要視하는 의미에서 5·16 時 保安課에 이것이 係로編成되었는데 防犯의 경우는 물론 警察의 機能이 일어난 犯罪의 사후 수사보다도 未然에 防止하는 것이 더 重要視됨은 當然한 것이며 오히려 어떤面에서는 만시지탄이라고 보겠으며 少年係는 都市化의 增大에 따라 少年犯이 급증하여 1959年에 비하여 1962年에는 3倍로 증가하여 이의 重大性이 正當히 인정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全體的으로 불적에 그間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점차적으로 民主國家의 警察로서 狹義의 保安, 豫防業務에 置重되어가며 一般行政分野에 넓게 介入하면서 것이 撤回되어가고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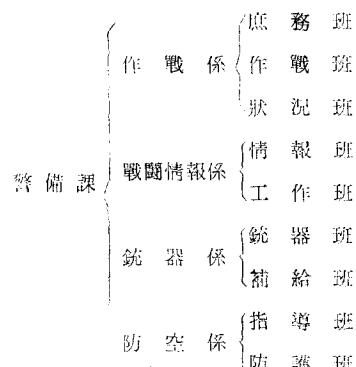
나. 警備警察

警備警察은 그의 主任務가 多衆犯罪 또는 集團犯罪등을 事前에 豫防 또는 鎮壓하는데 있으므로 물론 非權力的인 面도 있으나 多分히 權力的作用이 차지하는 比重이 크며 따라서 警察行政中에서 역시 核心의 位置를 차지한다고 생각되나 犯罪의 性格이 時代에 따라 變化함으로 警備警察의 任務도 變하였다고 보아야하며 그外에 역시 他分野와 같이 이를 擔當하는 治安局의 警備課의 機構도 變化가 심하였다고 보므로 우선 機構의 變遷을 保安行政의 경우와 같이 검토해 보려고 한다⁽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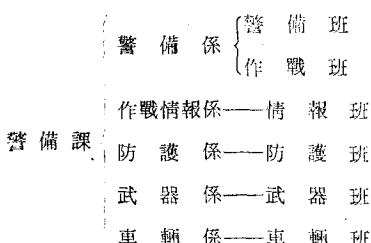
(1) 1948年—警備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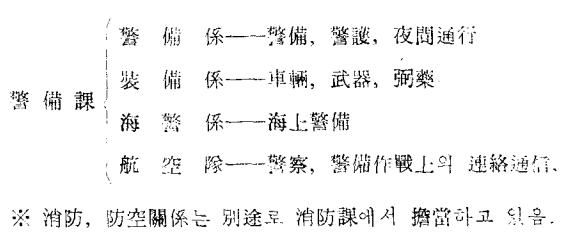
(2) 1953年



(3) 1957年



(4) 1964年



(51) 각년도별통계년보에서

警備警察의 機能의 内容으로서 狹義의 警備, 消防, 防空, 海洋警察등을 内包시키는 경우 다음과 같은 特色的인 變化를 찾아 볼수 있다.

① 治安局에서 發刊한 서적에 의하면 警備警察의 歷史를 警察棒時代, 칼빈時代, 重火器時代등으로 區分하고 있는데 이는 각各 軍政時代, 6·25 前의 大韓民國時代, 6·25 動亂中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區分하는 것은 警備警察의 主任務가 集團公安을 害치는 集團犯罪의 鎮壓에 있으므로 이 集團犯罪의 양상이 달라짐에 따라 鎮壓에 利用되는 手段도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즉 軍政時代에는 反共이 為主였으나 아직 武器를 使用하지 않고 있었으며 6·25 前의 大韓民國時代에는 武裝化하여 10·1 暴動事件, 麗順叛亂事件, 4·3 濟州暴動事件, 5·10 選舉妨害暴動事件등이 벌어져 警察도 武器를 使用하지 않을수 없었으나 事實上 칼빈으로서는 이미 너무 弊勢에 처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6·25 動亂後는 戰鬪部隊化하여 反共戰線에 重火器를 들고 나선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러나 6·25 後若干의 共匪掃蕩後는 反共의 問題와 다른 警備業務가 부과 되었으니 그 것은 곧 學生들의 폐모라고 볼수 있으며 특히 1960年後에 警備警察로서 요구되는 것은 催淚彈에 대비하기 위한 顏面마스크라고 볼수 있으며 따라서 重火器時代 다음에는 顏面마스크時代라고 하는 것을 附加하는 것이 適切할것 같다. 1964年 3月 21日부터 1964年 6月 9日까지의 이 關係統計를 보면 다음과 같다.

全國대모 警備狀況表⁽⁵²⁾

口 數	警 哨 人 員	動 哨 員 警 察 官	動 哨 裝 備 (車 輛)	被 害 狀 況			彈 使用 狀 況
				示威者	警 察	警 察 物 的 被 害	
72	204,283	90,559	2060	139	1,650	警 察官署 9 防石帽 128 車輛破損 34 其他 974 合 1,145	銃彈 146 手榴彈 2945 合 3,091

② 警備課 業務中에 이에 관한 情報活動이 内包되고 있었으나 이것이 情報課에 移管되어 警備機能은 主로 多衆犯罪等과 災害, 混雜등의 鎮壓에 制限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他課에 비하여 제일 가기싫어하는 課의 하나였는데 더욱 格下되어 土氣의 低下를 초래하고 있다.

③ 消防機構는 지난 20年間 變化가 無常하였다고 생각된다. 간단하게 略述하면 軍政時代에 警務部內에 消防課가 新設되었다가(1945年 11月) 1946年 4月에는 消防機關의 自治化 獨立의 길을 걷다가 1948年 大韓民國政府의樹立과 더불어 다시 警察속에 귀속하게 되

(52) 경찰통계년보, 1964年, p. 142.

이 消防課가 있었다가 1950 年 3 月에는 다시 축소되어 保安課의 係로 되었으며 1955 年 2 月에는 다시 警備課로 移管되어 오다가 5·16 後 다시 消防課가 再生하게 되었다⁽⁵³⁾.

이러한 點에서 消防機能을 警備警察에 包含시켜 다루는 것 부터가 問題視되겠으나 여기서는 便宜上 그와 같이 한것이며 이와 같이 기구가 數 없이 變更된 것에는 어떠한 原則이 있어서 그러한 것은 아니고 本來業務自體가 警察과 同一하게 다를 性質의 것이 아닌데다가 警察 内部에서도 庶子取扱을 받다 보니 機構改編에 따라 이리저리로 無原則하게 移管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消防行政의 特色的變化中의 하나는 1951 年以來 國庫外에 地方稅로 充當하게 되어 있어 一般警察에 비교하면 비교적 一般經費의 不足의 深刻性이 훨씬 하다는 것이며 業務의 性質로 보아 警察로 부터 獨立하여 地方自治體에서 관할하는 方向으로 나가는 것이 原則일 것이다.

다음의 또하나의 變化는 1958 年 3 月 31 日에 法律 485 號로 起草된지 8 年만에 消防法이 通過되어 實施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며 이로서 消防行政을 法律로서 뒷받침하게 되어 進一步한 것이다.

그러나 消防施設, 消防技術의 研究를 위한 豊算은 보잘것 없어 극히 빈약한 狀態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몇가지 統計를 보면 다음과 같다.

年度別人員 및 火災發生件數⁽⁵⁴⁾

種 目 年 度	消防官數 (定員)	火災發生 (件數)
1 9 5 2	248	566
1 9 5 3	691	2,453
1 9 5 4	669	2,286
1 9 5 5	669	1,411
1 9 5 6	599	1,341
1 9 5 7	569	1,150
1 9 5 8	569	1,549
1 5 5 9	569	1,558
1 9 6 3	569	1,946
1 9 6 1	569	2,355
1 9 6 2	573	2,174
1 9 6 3	573	1,904
1 9 6 4	573	2,617

(53) 韓昇湖, 우리나라 消防行政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碩士論文, 行政大學院, 1963 年, pp. 97—102.

(54) 각년도 경찰통계년보, *op.cit.*,

다음 消防車輛으로 보아도 1956 年에 271臺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1964 年에는 오히려 251臺로 되어 있으며 1962 年의 豫算을⁽⁵⁵⁾ 보아도 같은 事情이 說明되고 있다.

國費	7,600 萬원
地方費	8,200 //
計	15,800 //
內譯 消費的經費	14,400 萬원
投資的經費	1,400 萬원

④ 이외에 特記할 것은 1953 年 12 月에 海洋主權線(平和線)確保를 위하여 發足한 海洋警察隊을 들수 있으며 1955 年에 商工部에 移管되었다가 다시 治安局에 이관되었으며 또한 1954 年 10 月에 警察航空隊가 新設되었으나 모두 莫大한 經費를 所要하는 것이므로 裝備는 빈 약상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다. 情報警察

情報警察은 그 名稱이 여러번 바뀌었는데 이의 前身은 査察이며 그의 또 前身은 高等警察인 것이다. 이말은 本來 佛蘭西에서 由來한 것이나 日政時에 우리의 獨立運動人을 탄압하는 役劃을 하였음으로 惡印象을 풍기고 있으며 이것도 역시 우선 時代別로 機構의 變遷을 檢討해 보려고 한다⁽⁵⁶⁾.

(1) 1948 年에 治安局에 査察課로서 發足

(2) 1953 年

特殊情報課 { 第 1 係——庶務班, 査察班, 特殊班
 第 2 係——政治班, 社會班, 文化班
 第 3 係——日本班, 歐美班, 中國班
 中央分室——取調班, 刑事班, 工作第 1, 第 2 班.

(3) 1955 年

特殊情報班 { 第 1 係——庶務班, 査察班
 第 2 係——情報班, 議會班
 第 3 係——對日班, 歐亞班
 第 4 係——取調班, 刑事班

(4) 1957 年

特殊情報課 { 第 1 係——庶務班, 査察班
 第 2 係——情報班, 議會班
 第 3 係——對日班, 歐亞班
 第 4 係——取調班, 刑事班, 工作班
 第 5 係——特殊情報班, 特殊工作班

(55) 韓昇璣, *op.cit.*, p. 110.

(56) 각년도별경찰통계년보, *op.cit.*,

(5) 1964 年

情 報 課	第 1 係——企劃研究, 身元調查
	第 2 係——經濟, 社會, 文化諜報,
	第 3 係——對間諜,
	第 4 係——外事關係.

① 課의 名稱만이 바뀌었지 根本的으로 機構上의 主要한 「變化」를 찾아 볼수 없다. 다만 日政時의 高等警察이라고 하는 것이 惡名이 높았기 때문에 檢察課 또는 情報課로 名稱만 變更시켰을 뿐이다.

② 機能面에서는 解放直後에는 左翼에 對한 強打主義로 一邊倒했으나 建國後에는 轉向保導를 기도하여 打共唯一制를 若干 緩和하여 思想, 政治, 外事關係로 나누어 어느정도 分業을 이루었다.

③ 그러나 自由黨末期에 이를수록 對共關係만이 아니라 對野黨彈壓, 選舉運動에 깊이 干與하게 되어 다시 檢察이라는 名稱은 汚名화되었다.

④ 5·16 後 中央情報部가 생기어 對共關係는 여기서 主導的인 役割, 또는 우월한 位置에 서는것 같이 一般에게 간주되어 警察의 情報活動은 그 歷史에 비하여 다시 制約를 받게 되었다.

⑤ 情報蒐集方法으로서는 極秘에 속하는 事項이므로 파악하기 곤난하나 技術上의 亂進展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라. 搜查警察

情報警察은 政治的인 영향으로 인하여 國民으로 부터 中立性이 缺如되어 있다는 點에서 비판을 심하게 계속 받아왔지만 犯罪搜查의 경우는 수사비로 인하여 國民이 적은 일은 도 대체 申告도 안할 정도로 이에 대한 信賴感이 저하되어 있어 큰 社會問題化되어 있다.

이러한 수사를 擔當하는 治安局의 기구를 우선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⁵⁷⁾.

(1) 1946 年에는 搜查局, 1948 年은 搜查指導課와 鑑識課

(2) 1953 年

搜查課	防犯係——指導班, 防犯班
	搜查係——刑事班, 麻藥班
	物資係——經濟班, 金融班, 調查班
鑑識課	指紋係——指紋班, 警務班, 刑務班
	法醫係——庶務班, 血清班, 法醫班
	理化學係——化學班, 筆跡班, 發射班, 刑事寫真班

(57) *ibid.*,

(3) 1955 年

搜查指導課	搜查係——指導班, 防犯班
	刑事係——搜查班, 麻藥班
	經濟係——物資班, 金融班
	鑑識係——調查班, 整理班

(4) 1957 年—1955 와 同一

(5) 1964 年

搜查指導課	搜查第1係——企劃, 研究, 指導
	搜查第2係——現場檢證, 強力 經濟犯搜查
	搜查第3係——特殊, 特命犯罪搜查
	鑑識係——鑑識關係, 犯罪手法, 科學的方法研究

① 機構上으로는 오히려 두개의 課가 하나의 課로 統合 縮少된 感이 있으나 科學搜查研究所가 따로 設立되었으므로 後述하겠지만 이 面에 있어서는一步 前進하였다고 보아야 할것 같다.

② 搜查自體의 問題에 들어가기 前에 우선 犯罪에 관한 統計를 통하여 몇가지 傾向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⁵⁸⁾.

過去 10 年間 犯罪發生 及 檢舉件數

種別 年 度	刑法犯 發生件數	刑法犯 檢舉件數	1 年間 犯罪 發生件數統計	1 年間犯罪 檢舉件數
1944	130,517	96,489	186,023	151,180
1943	137,543	97,039	179,082	138,488
1942	126,283	92,431	168,938	134,753
1941	124,877	92,306	164,785	132,195
1940	144,109	109,690	181,195	147,068
1939	143,578	120,462	167,914	144,802
1938	145,561	129,714	183,058	167,165
1937	153,028	131,765	196,721	175,320
1936	147,262	131,159	197,404	181,267
1935	145,097	133,582	199,720	188,170
합계	1,397,855	1,134,637	1,824,840	1,560,408
1 년간 평균	139,785 枚	113,464 枚	182,484	156,041 枚
참고 1934	140,562	132,230	195,025	186,754
1933	143,480	—	186,520	—
1932	149,098	—	187,608	—

(58) 民主警察, 2 號, 1947 年, pp. 5—6, 및 각년도별 경찰통계년보에서

犯罪發生이 解放直後 급증하였으며 특히 5·16 後 급증하고 있으나 解放直後의 경우는 警察力의 弱化에 기인하는바 그냐고 보며 5·16 後의 경우는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非刑法犯 즉 特別法犯이 급증하는데 있다고 보아야 할것 같다. 즉 刑法犯은 1959 年에 비하여 1964

解放後의 犯罪傾向

경부부

種別 年 度	期 間	發 生 件 數	檢 舉 件 數	檢 舉 比 率 (%)
1945	8月～12月	14,779건	10,088건	68,26
1946	1月～12月	101,328건	78,021건	78,41
1947	1月～4月	36,168건	27,284건	75,22
1950	1月～12月	48,014건	33,878건	70,55
1951	"	87,241건	82,299건	94,33
1952	"	120,120건	113,666건	94,62
1953	"	118,237건	112,008건	94,73
1954	"	111,540건	104,751건	93,91
1955	"	143,780건	133,989건	93,19
1956	"	175,942건	167,282건	95,07
1957	"	169,821건	158,165건	93,13
1958	"	180,527건	162,943건	90,23
1959	"	185,218건	166,804건	92,39
1960	"	325,531건	290,817건	89,33
1961	"	473,522건	422,245건	89,17
1962	"	723,985건	665,960건	91,98
1963	"	710,780건	622,924건	87,63
1964	"	858,818건	746,494건	86,92

年에는 288% 上昇하고 있는데 特別法犯은 651% 上昇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완된 社會秩序를 갑자기 確立하려는데 특히 기인한다고 보겠다. 또한 總犯罪構成比率을 보면 1959 年에 兩者의 比率은 51.0 對 49.0%이었던 것이 1965 年에는 21.2 對 72.8%로 되어있기 때문이다⁽⁵⁹⁾. 그러나 우리가 看過해서는 안될 것은 이러한 數字는 모두 正式으로 報告된 것을 計算한 것이며 이외에 報告되지 않은 작은 犯罪가 얼마나 되는지 推測하기 곤난하다는 것이다.

이러한것 外에 治安局에서 提示된 犯罪의 特色의in 傾向을 引用한다면⁽⁶⁰⁾ ① 刑法犯의 發

(59) 内務部治安局, 1965 年 警察犯罪趨勢, 1966 年, p. 40.

(60) *ibid.*,

生보다 特別法犯 發生比率이 훨씬 높다. ② 犯罪는 都市에 集中하고 廣域化한다는 것이며 이는 日本의 경우에도 同一하다. ③ 強力犯의 兇惡化, ④ 業務上 過失致傷이 급증 ⑤ 女性犯의 增加比率이 男性보다 높다. ⑥ 刑法犯의 被疑者年齡이 20代 30代보다 40代 50代에서 增加率이 높다고 하는 것 등이다.

③ 이와 같이 犯罪數는 급증하는데 비하여 警察數는 훨씬 뒤쳐져 미처 수사의 손이 모자라게 되는 것이다. 特別法犯은 排除하고 刑法犯만 생각하더라도 1959年에 비하여 1964年에 犯罪는 288% 증가하고 있는데 警察人員數는 1959에도 33,035인데 1964年에도 33,878로 되어 있으니 絶對人員數가 不足함은 물론이다.

④ 여기에다 事情을 惡化시키는 것은 搜查費의 絶對額不足이다. 1966年的豫算에 의하면 1965年에 비하여 그래도 44% 증가한 것이 겨우 搜查活動費가 件當 114원이며 따라서 搜查要員 1人當 日平均 64원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搜查할려면 被害者에게 수사비를 「청구」하게 되지 않을수 없음을 알수 있다. 이의 解決方案은豫算의 増額에도 있겠으나 法令의 尊嚴性과 倫理意識을 國民에게 깊이 인식시켜 犯罪件數의 증가 현상을 統制하는 方向으로 努力하는 것이 根本的인 方法일 것이다.

⑤ 이러한 犯罪發生의 추세와 수사상의 難點을 완화시키는 方案이 됨은勿論 特히 重要한 것은 人權의 응호를 기하는 方法으로 수사를 하기 위하여 수사의 科學化를 이룩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點에서 近者에 이르러 몇가지 點에서 업적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前에서 수사가 多分히 經驗, 情報員등의 人的인 要因에 의지하여 이루어 졌으나 우선 1955年 3月에 國立科學搜查研究所가 內務部長官所屬下에 新設되어 鑑識業務가 활발히 展開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統計가 이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鑑識件數⁽⁶¹⁾

種別 年 度	法 醫 學	理 化 學	指 紋
1956	85	565	62,309
1963	896	1,526	197,946

이러한 것 외에 1961年에는 警察專門學校에 刑事學校를 附設하고 최근에 各市道警察局에 鑑識係를 設置하는 한편 一指指紋制, 現場鑑識制, 寫眞面接搜查制, 移動搜查制, 足痕跡鑑識, 事故惹起逃走車輛의 鑑識, 犯罪種類別專門搜查班의 設置등이 새로이 이루어져가고 있으나 이러한 새制度의 인식부족, 施設不適, 利用上의 不便, 一般警察行政職에의 轉補등으로 그렇게 용이하게 科學化되어가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警察行政의 他分野에 비하면 새로

(61) 각년도경찰통계年报에서

운 進展을 보이고 있는 分野라고 생각되며 금후 계속發展되어 人權의 응호에 萬全이 있기를 희망한다.

4. 結 論

以上으로서 지난 20 年 間의 警察行政의 變遷을 考察하였는데 여기서 結論을 짓는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수 있다.

警察行政이라고 하는 것을 人的의 要素로서 警官의 態度, 能力과 警察行政構造 및 이를 둘러싸고 있는 環境의 要因등으로 나누어 보려고 한다.

(1). 警官의 態度 能力이 解放直後에 비하면 向上되었다고 보겠으나 在職中の 能力發展이 거의 이루어지지도 못하며 또한 採用時에도 公開方法이 制約을 받아 類似한 性質의 職種인 軍隊에 비하면 向上의 程度가 극히 低級하다고 말할수 있다.

(2) 警察行政構造面에서 볼적에 機構, 管理, 豫算, 人事制度上의 制約이 너무나 심하고 지난 20 年間 別다른 發展를 찾아 볼수 없어 설사 올바른 態度와 能力を 가진 警官이 있다 하더라도 構造的인 制約으로 인하여 業績이 向上 되기 힘들게 되어 있다.

(3). 行政組織, 構造 人的 面에서 잘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일 심하게 이의 發展을 구속하는 것은 環境의 要因 그中에서도 政治의 面이라고 보며 이는 警察을 對共鬪爭 對野鬪爭의 道具로 利用하여왔다고 하는데 있으며 결국 始終一貫 執權者가 政敵을 除去하는데 利用한데 있으며, 日政 植民地下의 警察의 非民主的性格을 脱脚하지 못한데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部分的으로 構造의 分化 管理의 改善, 人的質의 向上, 保安警察의 機能의 變遷 搜查의 科學化등이 있었고 人員數가 거의 3 倍로 증가했지만 警察行政의 發展이 他分野에 비하여 뒤쳐진 原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려므로 今後는 우선 政治面 構造面에서 시작하여 人的面에 이르기 까지의 變革이 있을수 있게 國民의 적극적인 理解와 協調가 있어야 겠다.